

16 · 17세기 朝鮮燕行使의 중국 通報 수집활동

丁 晨 楠 *

- 1. 머리말
- 2. 16 · 17세기 情報流通에서 通報의 역할
- 3. 조선인의 중국 通報에 대한 인식
- 4. 조선연행사의 通報 수집활동
 - 1) 通報 수집 방식
 - 2) 1574년 趙憲이 수집한 명조 通報
 - 3) 三藩의 亂 시기 청조 通報의 수집활동
- 5. 맺음말

1. 머리말

通報는 명조의 중앙기구 通政司와 六科에서 편집되어 반포된 官報인 朝報와 邸報의 별칭으로, 오늘날의 신문과 유사한 공문서이다. 通報는 명청교체라는 정치적 변화를 겪으면서도 단절없이 발행, 유포되었다.¹⁾ 通報의 주요내용은 조정의 정치동향 및 행정운영에 관한 것으로, 관원들이 올린 상주문 및 황제의 批答 등이 실려 있었다. 조정의 정국변화에 관하여 신뢰도가 높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通報는 중국의 사대부는 물론, 중국의 동향을 주시하며 정보수집에 노력을 기울인 조선조정의 관심의 대상이기도 하였다.

16 · 17세기 조선의 對중국 정보수집 활동은 대개 정기적으로 중국에 파견한

* 연세대학교 사학과 박사과정(동양사).

1) 史媛媛, 2008 『清代前中期新聞傳播史』, 福建人民出版社, 40면.

연행사질단에 의해 전개되었다.²⁾ 明初 당시 조선은 은밀히 첨보원을 파견할 정도로 공격적인 정보수집 활동을 벌였으나, 명과의 관계가 점차 안정되면서 명의 管內로 합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행을 통해 정보수집이 이루어졌다.³⁾ 조선 연행사는 중국의 通報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였기 때문에 조선시대의 관찰사서, 연행록, 개인문집 등의 자료에는 通報의 내용이 다수 실리게 되었다. 이와 같이 조선에 유입된 일부 通報는 현재 중국에도 남아 있지 않는 희귀한 자료로서 그 가치를 지니고 있다.

조선연행사의 對중국 정보수집에 관한 연구 성과로는 이하와 같은 것들이 있다. 먼저 조선시대를 통틀어 대외정보 수집활동의 전개방식을 검토한 연구,⁴⁾ 對 중국 외교문서와 외교정보의 수집·보존체계를 분석한 연구,⁵⁾ 조선초기 대외정보 수집활동의 실상과 변화, 그리고 보고경로에 대한 연구,⁶⁾ 清初 당시 조선의 정보수집 機密費와 구입한 文書情報를 表로 정리한 연구⁷⁾ 등이 있다. 그리고 특정시기의 개별 사례를 통해 정보수집의 여러 경로 및 조선조정에 끼친 영향을 고찰한 연구 등이 다수 존재하며,⁸⁾ 16세기 연행사의 정보수집과 정보력을 본격

-
- 2) 명청교체 이전에는 대개 조선에서 명으로 보낸 사신들을 흔히 赴京使나 朝天使라 일컬었다. 청대에 접어들면 조선지식인들은 만주족이 세운 청나라를 天朝로 부르는 것을 피하여 赴京使와 朝天使 대신에, 燕京에 다녀온다는 뜻을 지닌 燕行使라는 용어를 채택하였다. 명 청대 모두를 연구대상으로 하는 본고에서는, 가치 판단을 수반하지 않는 燕行使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燕行使라는 명칭 문제와 관련하여 夫馬進, 2015 『朝鮮燕行使と朝鮮通信使』, 名古屋大學出版會, 1-4면 참조.
- 3) 구도영, 2016 「16세기 조선 對明 사행단의 정보수집과 정보력」 『대동문화연구』 95, 89면.
- 4) 송봉선, 2014 『조선시대에는 어떻게 정보활동을 했나?』, 시대정신.
- 5) 김경록, 2009 『조선시대 대중국 외교문서와 외교정보의 수집·보존체계』 『동북아역사논총』 25.
- 6) 이규철, 2007 『조선초기(태조기~세종대) 대외정보 수집활동의 실상과 변화』 『역사와 현실』 65; 이규철, 2007 『조선초기 대외정보의 수집활동과 보고경로』 『군사지』 65.
- 7) 張存武, 1987 『清代中韓關係論文集』, 台灣商務印書館, 86-146면.
- 8) 대표적인 연구는 荷見守義, 2014 『明代遼東と朝鮮』, 汲古書院, 269-273면 및 336-343면; 伍躍, 2007 『朝貢關係と情報收集』 『中國東アジアの外交交流史の研究』(夫馬進 編), 京都大學學術出版會, 185-216면; 김창수, 2012 『17세기 후반 朝鮮使臣의 공식보고와 정치적 파장』 『사학연구』 106; 白玉敬, 2012 『18세기 연행사의 정보수집활동』 『명청사연구』 38; 우인수, 2010 『17세기 후반 臺灣 鄭氏海上勢力에 대한 조선의 정보 수집과 그 의미』 『대구사학』 100; 河政植, 1998 『19세기 중엽 中國의 兵亂情報와 朝鮮王朝』 『승실사학』 12; 河政植, 2008 『태평천국과 조선왕조』, 지식산업사 등이 있다.

적으로 살핀 연구도 있다.⁹⁾ 이들 연구는 조선연행사의 對중국 정보수집 활동의 전개 및 보고경로에 대한 제도적인 구조를 설명하는 데 있어 큰 성과를 거둔 반면, 對중국 정보수집 활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通報 그 자체에 대한 관심은 희박하다.¹⁰⁾

한편 중국 新聞史 연구의 입장에서 조선 측 사료에 실린 通報의 내용이 지닌 가치에 주목한 연구가 있다. 중국인 학자 車邵義는 『朝鮮王朝實錄』에 실린 명대 萬曆연간(1573~1620) 通報의 제목 및 내용 일부를 정리하였다. 車邵義는 조선 연행사가 명조의 邱報를 접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비밀등급과 중요성이 낮고 邱報의 보충 간행물로 간주할 수 있는 通報에 대한 수집이 조선의 정보수집활동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고 보았다.¹¹⁾ 후술하겠지만 필자는 通報가 邱報의 보충 간행물이 아니라, 朝報와 邱報 그 자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현재 연행록에 실린 通報에 대해서는 정리가 결여되어 있으며 관련 연구 역시 아직까지 크게 진전되지 못한 상태이다. 즉, 조선 측 사료에 실린 通報에 대한 연구의 여지는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

본고에서는 전술한 선행연구의 성과 위에 16·17세기 조선연행사의 通報 수집 활동 전개에 착안점을 두고, 通報 수집방식 및 특정 시기에 입수한 通報의 내용을 검토하고자 한다. 朝報와 邱報라는 명칭이 아닌 通報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이유는 조선 측 사료에서 16·17세기 중국의 官報를 언급할 때 朝報과 邱報보다 通報라는 명칭을 더 자주 사용하였기 때문이다.¹²⁾

9) 구도영, 앞의 논문.

10) 陳彝秋는 조선연행사의 숙소인 玉河館에서 있었던 명조의 정보누설사태를 고찰하면서, 연행사가 옥하관에서 通報를 수집한 사례도 언급하였다. 그는 외국인에게 通報를 유출하는 것에 대한 공식적인 금령이 없었기에, 通報를 통해 명조의 군사와 정치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조선사절단의 가장 관습적으로 채택한 정보수집 방식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通報의 성격에 대해서 명조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행한 것이라고 간략히 설명하는 데 그쳐, 通報의 성격 및 다른 新聞類 공문서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陳彝秋, 2016 「從朝鮮使臣的中國行紀看明代中後期的玉河館：以會同館提督官爲中心」『“燕行錄”研究論集』(張伯偉 編), 凤凰出版社, 296-302면. 또한 伍躍의 연구는 三藩의 亂 동안에 조선연행사가 입수한 청조 정부의 공문서를 표로 정리한 바 있는데, 누락한 通報가 있으며 通報 자체에 관한 분석이 결여되어 있다. 伍躍, 앞의 논문, 208면.

11) 車邵義, 2010 「略論『李朝實錄』中的通報」『華夏文化論壇』1, 237-243면.

본고에서 16·17세기를 연구시기로 설정하는 이유는 아래의 세 가지가 있다. 첫째, 16·17세기가 중국의 지식정보체계에 있어 획기적인 시대였기 때문이다. 明末清初라는 사회변동기에 해당하는 16·17세기에는 유례없는 규모로 지식정보가 확산되었다.¹³⁾ 출판을 둘러싼 변화가 15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것은 확실하다. 그러한 사실은 古書 재간의 동향과 출판 건수의 증가뿐 아니라 책을 둘러싼 여러 움직임, 예를 들어 각각 비용이 줄어든다는 것, 종이의 생산과 소비의 확대 등에서 분명하게 나타났다.¹⁴⁾ 16·17세기에 이루어진 인쇄, 활자 등의 기술발전은 通報가 광범위하게 유통되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둘째, 16·17세기는 조선의 對중국 정보수요가 매우 절박한 시기였기 때문이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연이어 발생하였고 후금 세력이 강대해져 동북아시아의 국제정세는 크게 요동치고 있었다. 明清交替期에 對明·對後金[清] 관계에서 발생한 외교문제를 해결하고, 자국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조선에서는 양질의 중국 관련 정보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었다. 청조가 중원을 장악한 후에도 三藩의 亂과 같은 전란은 끊이지 않았고, 이는 여전히 명조의 부흥을 기대하고 있던 조선의 큰 관심을 끌었다. 당시 조선으로 유입된 通報는 조선연행사의 정보 수집활동을 밝혀내는 데 유용한 단서가 될 뿐 아니라, 조·명/청 관계사와 정보유통사 연구에도 귀중한 사료를 제공한다.

셋째, 사료의 제한 때문이다. 조선 측 사료에서 명확히 중국 通報를 언급한 첫

12) 명청시대의 실록에는 朝報와 通報에 비해 邸報라는 명칭이 더욱 통용되었다. 『명실록』에 나온 기사를 보면 官報를 가리켰을 때 通報 2개, 朝報 3개, 邸報 101개 용례가 있으며 邸報라는 명칭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명조 官報에 대한 기사에는 通報 77개, 朝報 14개, 邸報 7개 용례가 있으며 通報의 용례가 더 많았다. 『淸實錄』에서도 官報를 가리켜 通報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없지만, 『조선 왕조실록』의 경우 17세기까지도 청조의 官報를 가리켜 通報라고 하는 용례가 4건 확인된다. 즉 조선에서 명청시대 중국의 官報를 가리킬 때 通報라는 명칭이 더욱 통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통계는 국사편찬위원회 『명·청실록』과 『조선왕조실록』 온라인 자료를 이용한 것으로, 같은 기사 내에 동일한 명칭이 반복하여 나타나면 하나의 용례로 계산하였다.

13) 車惠媛, 2004 「18세기 청조의 언론통제와 관료사회: 언관 謝濟世 사건의 의미」 『동방학지』 125, 223면.

14) 井上進, 2002 『中國出版文化史: 書物世界と知の風景』, 名古屋大學出版會, 222-226면.

기록은 1524년 12월 19일의 기사로, 중종이 嘉靖帝가 武宗을 皇伯考라 하고 獻帝를 皇考로 삼았다는 通報를 읽었다는 내용이다.¹⁵⁾ 마지막 용례는 柳壽垣(1694~1755)이 1729년부터 1737년에 걸쳐 편찬한 『迂書』에서 확인되는데, 중국 通報가 활자로 인쇄된 것이라 하는 언급이었다.¹⁶⁾ 실제 중국의 通報(朝報와 邮報 포함)에 대한 조선 측의 언급을 살펴보면 주로 16·17세기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18세기에 들어서는 중국 通報(朝報, 邮報)에 관한 기사가 혼자히 줄어들었다. 그 이유는 18세기에 접어들면 정보유통 시스템에 있어 塘報(또한 堂報, 塘報로 표시됨), 京報와 같은 新聞類 공문서가 대두하여, 通報를 대신하여 조선 연행사의 주된 정보수집 대상이 된 때문으로 보인다.¹⁷⁾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조선시대의 관찰사서, 연행록, 개인문집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중국 측 사료와 비교해보면서 연구를 이루고자 한다. 먼저 通報의 개념과 16·17세기 정보유통에 있어서의 역할을 고찰할 것이다. 다음으로 조선인의 通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며 조선연행사가 通報를 중시한 이유를 분석할 것이다.

15) 『중종실록』 권52, 중종 19년 12월 19일 9번째 기사. 그러나 실제 嘉靖帝는 孝宗을 皇伯考, 興獻帝를 皇考, 武宗을 皇兄으로 하였다. 『明世宗實錄』 권37,嘉靖 3年 3月 21日. 또한 명조 朝報에 대한 명확한 기록은 이에 앞서 1508년에 나타났다. 『중종실록』 권5, 중종 3년 3월 14일.

16) 柳壽垣, 『迂書』 권7, 「論免稅保率之類」(1971 서울대학교 고전간행회) 24면 “以通報言之, 活字細板, 啟嗟印出, 彼中一年通報, 猶小於吾東一二朔朝報, 彼則一番排字, 可印萬張。” 또한 박제가는 1778년 쓴 「북학의」에서 中國 邮報는 모두 판각으로 발행된다고 언급하였다. 朴齊家, 『楚亭全書下』 「北學議」(1992 亞細亞文化社) 502면 “中國郵報皆印板, 聞我國亦嘗印出而中止, 事在經筵日記。”

17) 16·17세기에 주요정보 매체로서 通報 이외에 塘報와 京報라는 매체도 있었다. 내용을 보면 명대의 塘報에는 주로 軍事情報 및 긴급 군사 동향이 실려 있었다. 당시 邮報에서 군사기사 관련 내용의 출처는 塘報였던 것이다. 通報(邮報, 朝報)는 雍正연간(1723~1735)에 조정에 의해 그 발행이 금지된 것으로 보이며, 그 대신 軍事 동정뿐만 아닌 더 풍부한 내용을 포함한 塘報가 유행하게 되었다. 곧 雍正연간 이후의 塘報는 이전 시기의 通報(邮報, 朝報)의 역할을 기능했다는 것이다. 京報라는 용어는 明末에 이미 나타났으나 널리 사용되지 않았으며, 雍正시기에 이르러서는 사용되더라도 대개 邮報의 별칭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雍正時期부터 民間資本이 설치한 民間報房에 의해 발행된 京報도 등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車培根, 1984 「中國「郵報」의 起源과 發達過程에 관한 小考: 우리나라 「朝報」와의 比較研究를 위하여」 『言論情報研究』 21, 93면; 姚福申, 1986 「中國古代官報名實考續」 『新聞與傳播研究』 1, 122-123면 참고.

마지막으로 조선연행사가 어디서 어떻게 通報를 수집했는지를 고찰함과 더불어 1574년 趙憲이 수집한 명조 通報와 三藩의 亂 시기에 유입된 청조 通報를 분석하겠다. 이들 사례를 통해 조선연행사의 對중국 정보수집에 있어서 通報가 지닌 가치를 확인하고자 한다.

2. 16·17세기 情報流通에서 通報의 역할

朝報라는 공문서는 일찍이 당나라 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唐代의 朝報은 除目朝報라고 하며 주로 관원들의 升進과 任免 등의 동향을 게재하였다. 宋代의 朝報은 朝廷의 일상 사정을 등재하였는데, 대부분의 내용은 관원들의 升進과 除授 사항이었다. 이에 당시 사람들은 朝報를 推升朝報 혹은 除目報狀이라 불렀다.¹⁸⁾ 邸는 원래 지방정부의 수도에 주재하는 사무처와 같은 기구를 말하는 것으로, 즉 邸報란 지방정부에게 중앙정부가 내린 詔令과 奏章, 그리고 宮廷事情 등을 전달하는 공문서였다.¹⁹⁾

명대에 들어서 朝報는 通政司와 六科에서 편집되어 발행되었다. 황제에게 상주문이 전달되어 朱筆로 쓴 碑批가 내려지면, 六科 혹은 通政司는 상주문과 碑批 등의 문서를 편찬하여 書冊으로 만들어냈다. 이러한 書冊이 바로 朝報였다. 수도에 있는 각 衙門이 朝報의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사람을 보내 六科廊房에서 필사하도록 하거나, 六科가 사람을 시켜 별도로 필사하여 각 아문에 보내야 하였다. 지방에 있는 관원들은 수도에 주재하는 提塘官 혹은 문서를 필사하기 위해서 특별히 고용한 사람을 통해서 邸報를 얻었다.²⁰⁾ 명대 사람이 보기에 邸報는 곧 朝報였다. 明末清初에 생활했던 王士禛(1634~1711)의 말에 의하면 朝報를 가리켰을 때 邸報라는 명칭도 사용하며 朝報와 邸報이라는 명칭이 이미 혼용되고 있었다.²¹⁾

18) 姚福申, 1985 「中國古代官報名實考」『新聞研究資料』3, 199-201면.

19) 金玲, 2011 「明清邸報研究」, 雲南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3면.

20) 尹韻公, 1997 『中國明代新聞傳播史』, 重慶出版社, 100-102면.

청조의 邸報는 명조 邸報 제도를 이어서 그 바탕 위에서 지속적으로 발행되어 반포되었다. 그러나 奏摺제도와 軍機處가 성립된 이후, 諭旨와 황제가 공개해야 한다고 여긴 奏摺은 軍機處를 경유해야 비로소 내각에서 유포될 수 있었다. 청조 邸報에 실린 諭旨와 奏摺은 군기처를 경유해 내각에서 유포한 것이 그 출처인 셈이다.²²⁾

명대 邸報의 성격은 황제의 충성스런 대변인이라 할 수 있다. 邸報를 통해 황제의 지시와 명령 등을 臣民에게 전달하였고, 황실의 중대한 행사나 국가정치의 중요한 동향을 선별적, 그리고 의도적으로 선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邸報에 실린 기사는 황제와 대신들이 어떤 사건에 대한 처리함에 놓고 빚어진 갈등을 숨기지 않았다.²³⁾ 명조 邸報의 주된 내용은 정치 관련 기사로, 그 외에도 군사, 자연재해, 사회, 경제 및 대외교섭에 관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었다. 즉 邸報는 명대사회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유행한 정보매체였다.²⁴⁾ 清初에도 邸報의 내용을 보면 군사 동향에 관한 기사는 물론 인사임용, 국가의 중요사안 등에 대한 상세하고 지속적인 보도도 있었다. 다시 말해 당시 國計와 民生에 관계된 정보 역시 邸報를 통해서 대개 얻을 수 있었다.²⁵⁾

기존의 중국 新聞史 연구에는 通報에 대한 설명이 그다지 많지 않았다. 앞에 언급하듯이 通報는 비밀등급과 중요성이 낮다 하여 邸報의 보충 간행물로 간주하는 견해가 있는데²⁶⁾ 이것은 사실에 부합한 결론이라고 볼 수 없다. 通報가 바로 朝報와 邸報임은 『明實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기사로 아래의 세 가지가 있다.

21) 王士禎, 『池北偶談』 권4, 「朝報」(1982 中華書局) 75면 “今之朝報, 或曰邸報, 亦有所本, 見王明清『揮麈錄』, 趙升『朝野類要』. 云朝報日生事宜也, 每日門下後省編定, 請給事判報, 方行下都進奏院報行天下. 其有所謂內探, 省探, 衙探之類, 皆衷私小報, 率有漏泄之禁, 故隱而號之曰新聞, 蓋自宋時已然.”

22) 史媛媛, 앞의 책, 43-46면.

23) 尹韻公, 앞의 책, 70-71면.

24) 尹韻公, 앞의 책, 70면.

25) 史媛媛, 앞의 책, 40면.

26) 牟邵義, 앞의 논문, 237-243면.

첫째는 1477년 윤2월 7일에 通報를 금지하는 기사이다.

㊂ 通報를 금지하는 旨意가 내렸다. 이전에는 상주문을 올려 旨를 얻은 후에 여러 府署가 (그것을)抄出하여 奉行하였다. 또한 서로 전하여 朝政을 알리도록 하였다. 이제 錦衣衛 千戶 吳綏는 (通報를 통해) 機密을 누설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마땅히 임금하야 한다고 하였다. 황제가 허락하였다.²⁷⁾

둘째는 1488년 3월 6일에 禮科 都給事中 李孟陽(1432~1509)이 通報에 관한 금령을 풀어달라고 올린 상주문이다.

④ 禮科 都給事中 李孟陽은 5가지 일에 대하여 말하였다. (중략) 하나는 祖宗 이래로 수도에 있는 文武 여러 관사의 奏疏와 매일 받은 批答과 旨意는 이미 각각 內府와 六科에서 菲사되어 실행되는데 또한 서로 전하여 菲사하고 그것을 通報라고 칭합니다. 따라서 임금의 말씀을 항상 천하에 널리 퍼 알게 합니다. 근래 張璡가 누설했다 하여 금지되었습니다. 旨意를 전하여 菲사하지 못하니 크고 작은 政令을 다른 부서들이 못들은 체 합니다. 예전처럼 전하여 菲사하도록 하는 것을 허락해주시기 청합니다. (황제가) 有司에게 의논하여 처리하고 보고하도록 하라고 명하였다.²⁸⁾

셋째는 3월 19일에 禮部에서 李孟陽의 상주문에 대해 황제에게 전한 覆奏이다.

⑤ 예부는 禮科 都給事中 李孟陽이 올린 朝報를 허락해 달라는 일에 覆奏하였다. 말하기를 祖宗 이래로 무릇 旨意가 있으면 모두 菲사할 수 있으며 서로 이음이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요즈음 금지하라는 詔令이 있으니 크고 작은 政令을 다른 부서에서는 못들은 체 합니다. 聖明한 시대에 어찌 이렇게 해야 합니까? 만약에 간사하고 교사한 폐단이 있다면 누가 그 정 말과 거짓말을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李孟陽이 말했던 것처럼 이전과 같이 菲사하도록 하기를 청합니다. (황제가) 이것을 허락하였다.²⁹⁾

27) 『明憲宗實錄』 권163, 成化 14年 閏2月 7日 “禁通報旨意 故事 章奏既得旨，諸司抄出奉行，亦互相傳報使知朝政。至是，錦衣衛千戶吳綏以爲漏泄機密，宜嚴禁之。詔可。”

28) 『明孝宗實錄』 권12, 弘治 1年 3月 6日 “禮科都給事中李孟陽言五事。(중략) 一、祖宗以來，在京文武諸司奏疏，每日所得批答旨意，既各於內府各科抄出施行，又遞相傳寫，謂之通報，故王言常宣布于天下。近以張璡泄漏之故禁，不許傳寫旨意，致大小政令他司若罔聞知，乞仍容傳寫。命所司議處以聞。”

⑨사료에 의하면 1477년 명조정에서 通報를 금지하는 금령을 반포하였다. ⑩와 ⑪사료에 따르면, 1488년에 들어 李孟陽은 通報에 관한 금령을 풀어달라고 상주문을 올렸는데 예부의 覆奏와 황제의 허락을 받았다. 李孟陽은 수도에 있는 여러 관사에서 올린 奏疏와 매일 받은 批答과 旨意를 서로 전하여 필사한 것을 通報라고 하였는데, 禮部의 覆奏를 보면 李孟陽이 朝報를 許通해달라고 했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예부의 覆奏를 감안하면 당시 명조 정치계에서 서로 전하여 필사하는 것은 朝報였다. 이 사례는 通報가 朝報를 베낀 것으로 당대 사람이 보기에 通報가 朝報 혹은 邸報로 간주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15세기 후기에 通報의 유통방식은 필사이며 그 주된 내용은 文武 諸司의 奏疏와 매일 전달받은 批答과 旨意 등이었다.

명대에는 通報를 서로 전하여 알리는 것을 금지하라는 명령이 몇 번이나 내려 졌으나 그다지 효과를 얻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³⁰⁾ 16세기에 들어 명대 관원들이 通報를 정치 참고자료로 읽었다는 기록은 吏部尙書를 지낸 周用(1476~1547)의 상소문에서 확인된다.³¹⁾ 明後期에 들어 板刻이나 목활자로 인쇄된 邸報, 곧 通報도 나타났다.³²⁾ 이것은 通報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큰지와 더불어 通報가 명대 사대부들의 정치생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보여준다. 또한 책 형태로 하는 通報에 관한 기록은 아래와 같이 있다. 명대 周王 집안의 藏書 목록인 『萬卷堂書目』에는 「嘉靖通報七十二冊」의 존재가 기록되어 있는데, 明末의 전란으로 이들 通報가 기타 장서와 함께 소실되었다.³³⁾ 都察院 右副都御史 郭應聘(1520~1586)은 廣西 府江 일대의 반란세력을 토벌하면서 『風紀輯覽』과 『通報』 등의

29) 『明孝宗實錄』 권12, 弘治 1年 3月 19日 “禮部覆禮科都給事中李孟陽所奏通朝報一事. 謂祖宗以來, 凡有旨意皆得傳寫, 相承已久, 近有詔禁止, 大小政令他司若罔聞知, 聖明之朝豈宜如此. 脫或有奸邪矯詐之弊, 孰能辯其眞僞. 請如孟陽言, 似舊傳寫, 從之.”

30) 余繼登, 『典故紀聞』 권15(1981 中華書局), 275-276면 “故事, 章奏既得旨, 諸司抄出奉行, 亦互相傳報, 使知朝政. 自成化時汪直用事, 其黨千戶吳綬以爲漏泄機密, 請禁之. 後之奸人恐不便己私, 遂往往禁諸傳報者, 然卒未有不傳, 亦可笑矣.”

31) 周用, 『周恭肅公集』 권16, 「江南災傷疏」(明嘉靖28年吳江周氏川上草堂刊本, 하버드대학교 소장본) “臣於此後每每訪閱通報, 未見奏奉明旨. 臣亦以通報文字傳寫詳略不同, 偶未之見.”

32) 尹韻公, 앞의 책, 131-137면.

33) 朱睦樞, 『萬卷堂書目』 권2, 觀古堂書目叢刊本, 4면.

서책을 획득했는데 명확히 通報의 존재를 언급하였다.³⁴⁾

요약하자면 16·17세기의 정보 전달 매체 가운데 通報는 주로 사대부 사이에 유통되었던 내부 정치 참고자료였기에 가장 신뢰도가 높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通報는 판각 또는 목활자를 이용했기 때문에 책 형태로 널리 유포될 수 있었다.

3. 조선인의 중국 通報에 대한 인식

조선연행사는 왜 중국 通報 수집에 지대한 노력을 기울였을까? 그 이유는 연행사 및 조선조정의 通報에 대한 인식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본다. 먼저 조선인이 通報가 곧 朝報와 邸報임을 알고 있었는지 살펴보자.

조선연행사가 남긴 기록에는 명대 官報를 가리켜 通報와 邸報라고 혼용한 기사가 확인된다. 이들 기사에서는 明末 사람들이 官報를 읽어서 국가의 政事를 알게 된 것을 기록하고 있다. 1636년 聖節千秋進賀 사절단 정사 金堉과 서장관 李晚榮이 10월 29일 薊州에 도착했을 때 현지 노인 몇 명을 만났는데, 노인들은 자신이 읽은 官報에는 조선이 청나라와 講和하여, 겉으로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강조하지만 속으로 청나라에 귀순했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하였다. 金堉과 李晚榮은 각각 노인들이 “우리가 兵備 衙門 근처에 거주하니 항상 通報를 읽을 수 있다” 또는 “우리가 邸報를 읽었다”고 말했다고 기록하였다.³⁵⁾ 이 기록에 官報의 명칭이 다르게 기재된 이유는 노인들이 원래 다르게 말했기 때문이라 할 수

34) 郭應聘, 『郭襄靖公遺集』 권3, 「討平懷遠捷音疏」(2013 『續修四庫全書』 集部1349, 上海古籍出版社) 62-63면 “並獲鶴頂榆木黑花帶皮印囊各件, 風紀輯覽, 通報等書. (중략) 風紀輯覽, 通報各一本.”

35) 金堉, 『燕中聞見』 「丙子七月副使金堉」(2001 燕行錄全集 95, 東國大學校出版部) 160-161면 “適見丈老輩五六人會話於舖舍, 見元立呼與言曰, 吾輩居在兵備衙門近處, 每得見通報. 汝國與東寢構和, 陰順陽義云云”; 李晚榮, 『雪海遺稿』 「崇禎丙子朝天錄」(2006 韓國文集叢刊續 30, 民族文化推進會) 82면 “有父老四五輩, 會坐舖舍, 見譯官呼與語曰, 吾輩得見邸報, 爾國與東寢講和, 陰順陽義云.”

있는데, 金堉과 李晚榮이 通報와 邸報를 같은 것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이라 할 수도 있다. 여기에 언급된 通報와 邸報가 같은 것임은 틀림없다고 보인다.

『선조실록』에는 조선조정에서 명조의 通報가 곧 朝報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기사가 수록되어 있다. 1596년 8월 1일 선조는 명의로 遊擊인 葉燦을 접견하면서 奏聞使 具宬을 통하여 이전에 조선의 명의로 兵部尙書 石星에게 허위문서를 보낸 일이³⁶⁾ 중국 조정의 通報에 났기에 謄書를 받았다고 말하며 葉燦에게 혹시 그 일을 아냐고 물어봤다. 葉燦에게서 모른다는 대답을 받은 선조는 다시 奏文이 아닌데 어떻게 朝報에 나왔냐고 물었다.³⁷⁾ 며칠 후인 8월 10일에 승문원에서 조선이 尚書 石星에게 글을 보낸 일이 朝報에 나왔으니, 이는 작은 일이 아니기에 이번에 동지사가 갈 때 예부에 咨文을 보내는 등으로 무마해야 한다고 했는데, 대신들은 명조 通報가 국외로의 유출을 금하는 것이므로 通報를 증거로 삼으면 안 된다고 하였다.³⁸⁾ 이들 기사는 명조의 官報를 언급하면서 通報와 朝報라는 용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당시 조선조정에서도 명조의 官報를 가리켰을 때 通報와 朝報라는 명칭을 혼용하였고, 通報가 곧 朝報라는 것 역시 주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연행사는 일찍이 중국 通報의 내용이 다양하고 신뢰도가 높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通報를 중국 정세를 확인하거나 국왕에게 장계 및 상주문을 올렸을 때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다.

조선에서는 민간인이 자국의 朝報을 인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다. 그 이유는 朝報를 간행하는 것이 사사로이 史局을 설치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으며 만일 다른 나라에 流傳되면 나라의 나쁨을 드러내게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³⁹⁾ 1589년 사은사절단 정사로 北京에 다녀온 鄭琢은 이 금령에 반대하면서

36) 『선조실록』 권78, 선조 29년 8월 1일 2번째 기사. 기사를 보면 아무개가 조선의 명의로 石星에게 글을 보냈다는 것으로 보인다.

37) 『선조실록』 권78, 선조 29년 8월 1일 4번째 기사.

38) 『선조실록』 권78, 선조 29년 8월 10일 4번째 기사.

39) 李珥, 『栗谷全書 2』 「經筵日記」(1989 韓國文集叢刊 45, 民族文化推進會) 185면 “先是京中游手之輩，聞中朝通報皆印行，欲效中朝印通報賣以資生，呈狀于議政府，請印朝報受各司之價以資生，政府許之，又稟于憲府亦許之。其人等乃刻活字印朝報，賣于各司及外方，邸吏士大夫見者皆便之。行之數月，一日自上偶見之，震怒曰，刊行朝報，與私設史局何異。若流傳

명조 通報의 유통을 근거로 언급하였다. 그에 따르면 명조의 通報는 궁중 노비의 변고에 관계되는 일조차도 숨김없이 매일 진행되었다.⁴⁰⁾ 이는 곧 중국의 通報를 다양한 내용을 담긴 신빙성이 있는 문서로 인식한 것이었다.

1598년 말에 명조 兵部 朝鮮贊畫主事 丁應泰는 조선이 왜구를 끌어 들여 내통했다고 상주하였는데, 이에 대해 辨誣하기 위해서 黃汝一은 비롯한 연행사가 北京에 들어갔다. 黃汝一 일행은 명조의 정치동향을 예리하게 주시하며 通報 수집을 염두에 두었다. 黃汝一是 1599년 3월 12일 萬曆帝가 조선의 銀礦이 있다고 들어서 특별히 환관을 보내 채굴하여 제련하려 한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通報를 읽고 난 후에야 그 허설을 파악할 수 있겠다는 기록을 남겼다. 그는 그날 通報를 얻어서 忠義衛 中所에 붙여진 千戶 閻大經이 올린 상주문과 황제의 聖旨를 읽고, 銀礦 채굴의 소문이 조선이 아닌 遼東 지역의 것임을 알게 되었다.⁴¹⁾ 黃汝一의 판단 근거 역시 명조의 通報에 있었던 것이다.⁴²⁾ 또한 그는 通報에서 丁應泰의 상주문에 대해 萬曆帝가 병부 등 여러 府署의 관원들이 의논하여 상주하라고 하였음을 알게 되었고, 최근 丁應泰가 올린 상주문도 아울러 읽게 되었다.⁴³⁾

他國，則是暴揚國惡也。”

40) 鄭琢,『藥圃集』「請勿禁朝報箚」(1989 韓國文集叢刊 39, 民族文化推進會) 460면 “大明高皇帝，訕謗朝廷者勿問。中朝通報，本無所諱。逐日刊印。至如事係禁中宮僕之變，亦不諱之。”

41) 黃汝一,『海月集』「銀槎日錄」(2005 韓國文集叢刊續 10, 民族文化推進會) 193면 “一行詣闕謝免宴時，有言皇上聞我國銀礦欲專差太監採鍊之事，待見通報，方知虛實。是日得見通報，則忠義衛中所付千戶閻大經蹤請遼東等處，未蒙皇上擇人任事。（中略）奉聖旨，這所奏遼東地方金銀礦洞及馬市方物，稅課開採，有裨國用。準差右監丞高準督鑄元奏官民前去彼處，會同撫按等官，照例開採，徵收銀兩及馬匹解進，不許擾害地方，寫勅與他該衙門知道。”

42) 閻大經이 올린 상주문이 邸報에 실린 것은 당시 都察院 右僉都御史 李植이 쓴 「請罷遼左開采疏」에서 확인된다. 李植,『李中丞奏疏』「請罷遼左開采疏」(1962 『皇明經世文編 6』 권 425, 中華書局) 4640면 “忽接邸報，見義勇前衛千戶閻大經一本，仰沐聖恩俯據忠悃事。奉聖旨，這所奏遼東地方金銀礦洞及馬市方物稅課開採，有裨國用。准差奏內尙膳監左監丞高淮，督率原奏官民，前去彼處，會同撫按等官，照例開採，徵收銀兩及馬匹解進，不許擾害地方，寫敕與他該衙門知道。欽此。”

43) 黃汝一, 앞의 책, 172-173면 “朝早得見通報。已於昨日奉聖旨，兵部會同府部九卿科道看議了來說。臣等以為若此則五府六部九卿六科十三道諸官處，必須一一呈文，仍將前日閣老前所呈草稿增減刪改，隨其衙門，各樣措語，并與奏稿，即令寫宇官李海龍，譯官李彥華，李元龍等晝夜繕寫四十餘道”：“得見通報丁應泰一本，賊臣賂倭賣國，邪臣橫詆怙奸，懇乞聖明大奮乾斷顯誅和，倘早罷孤臣事云云。在通報。”

이들 通報는 조선연행사가 辨誣 활동을 순조롭게 전개하는 데 가치가 있는 정보를 제공하였다.⁴⁴⁾

李民宬은 1624년 1월 20일 先來通事, 즉 사신이 돌아올 때 사절단보다 앞서 돌아오는 역관을 파견하여 국왕에게 올린 「冊封淮完事先來狀啓」라는 상주문에서 명조의 사정을 보고하면서 “그 말이 通報에 있다[語在通報]”고 5번이나 언급하여 보고한 내용의 신빙성을 강조하였다.⁴⁵⁾ 그는 같은 장계에서 수집한 명조 공문서 목록을 열거하며 그 중에는 通報 179권이 있다고 하였다. 특히 조선에 관련한 通報 6권을 표시하였으며 이를 별개로 바치겠다고 하였다.⁴⁶⁾ 對중국 외교 정보 수집의 큰 영역 중 하나는 중국 문서의 필사였으나⁴⁷⁾ 179권이라는 막대한 양을 감안하면 李民宬이 바친 通報가 通報의 필사본이 아닌 通報의 원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李民宬은 이들 通報를 본국에 보내기 위하여 先來通事 파견이라는 방식을 이용하였다. 선래통사를 선발하여 조선에 보내어 보고하는 경우, 보통 긴급사안(시간의 측박함), 중요사안, 중국 사신의 출래 등의 사안이 있었다.⁴⁸⁾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李民宬이 장계에서 通報의 내용을 근거로 삼으며 通報의 원본을 바쳤다는 것은 결국 通報의 신뢰도를 인증하며 對明交涉에 通報가 지닌 유용성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清代 들어서도 通報가 조선으로 유입되는 것은 여전히 공식적으로 금지되어 있었다. 1659년 북경에 다녀온 告訐使 鄭維城은 재물을 대가로 어렵게 通報를 구입하였다. 鄭維城의 말에 의하면 청조 政令의 득실에 관한 것이 모두 가져온 通報 속에 있으며, 그는 이들 通報를 통해서 청조가 실행한 政令에서 백성을 잘

44) 黃汝一 일행이 당시 변무활동에서 채택한 명조 通報 수집활동을 비롯한 여러 措置는 黃修志, 2013 「萬歷朝鮮之役後期的中朝黨爭與外交」『韓國研究論叢』 1, 177-178면.

45) 李民宬, 『敬亭集』 「冊封淮完事先來狀啓」(1991 韓國文集叢刊 76, 民族文化推進會) 513-519면.

46) 위의 책, 519면 “通報一百七十九卷. (중략) 通報中事係我國付標六卷, 別封并爲監封上送爲白臥乎事是良旅.”

47) 김경록, 앞의 논문, 307면.

48) 위의 논문, 308면.

돌보는 부분이 많음을 알게 되었다.⁴⁹⁾ 즉 清初에도 通報가 조선조정의 청조 정세에 대한 판단 근거였다.

조선에 유입된 중국 通報의 주요 독자는 국왕과 비변사 대신들이었다. 通報에 기재된 내용은 조선조정에서 중국의 정세를 파악하고 대외교섭의 자료로 삼기 위한 중요한 근거였다고 할 수 있다. 선조는 通報에 보이면 분명한 것이라 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⁵⁰⁾ 필자의 통계에 의하면 『조선왕조실록』에서 국왕이 대신들과 중국의 동향을 논의하면서 스스로 通報를 읽었다고 하는 언급은 20번에 이르렀다. 중종은 1번, 선조는 17번, 광해군은 2번을 언급한 바가 있었다. 또한 『승정원일기』에서도 인조가 通報를 읽었다고 하는 기사가 2건 확인된다. 이를 통해 중국의 通報가 조선국왕의 愛讀하는 정치 참고자료로서 국제정세를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조선국왕은 분명히 通報를 읽었다고 하더라도 명조 대신을 대면했을 때에는, 명조의 通報는 입수할 경로가 없으므로 읽을 수 없다고 강조하기도 하였다.⁵¹⁾ 다시 말해 조선국왕은 자신이 通報를 읽었다는 사실을 명조정에 일부러 숨겼다고 할 수 있다.⁵²⁾

조선 대신들은 비변사에서 중국 通報를 얻어서 읽을 수 있었다.⁵³⁾ 중대한 사

49) 『승정원일기』 1659년 10월 20일 “維城曰，通報得來之事，誠爲多幸矣。上曰，無乃彼人，欲爲誇張而作此冊，非其眞耶？維城曰，此乃彼中禁物，僅得買來，寧有虛張造冊之理乎？彼之政令，實多善爲之事矣。” 같은 날의 『실록』에서 “因問彼中事情，對曰，已盡於前日所進別單中，而其政令得失，俱在於覓來通報中矣。大概彼能恤民勤政，無少闕漏，故民皆樂業，未嘗有思漢之心也”라고 기록되어 있다. 『현종실록』 권1, 현종즉위년 10월 20일 2번째 기사.

50) 『선조실록』 권127, 선조 33년 7월 28일 5번째 기사 “傳曰，見於通報則明。”

51) 『선조실록』 권110, 선조 32년 3월 7일 1번째 기사 “上曰，小國以外藩，天朝通報，無路得見。”

52) 물론 반드시 通報를 읽었다는 사실을 숨겨야 하는 것이 아니었다. 1599년 2월 24일에 선조는 明의 장수 邢玠를 만난 자리에서 “通報를 보니 皇上께서 東征의 공을 기뻐하여 종묘에 감사드리고 軍功에 대해 級錄하라고 하였으나, 감히 大人을 위하여 축하드립니다.”라고 말하며 通報를 축하의 근거로 삼았다(『선조실록』 권109, 선조 32년 2월 24일 2번째 기사). 그러나 바로 그날 전에 명조 장수 吳從周를 대면했을 때 오종주가 조선에서도 중국의 塘報를 볼 수 있는지를 질문하자 선조는 “外藩의 신하로 어떻게 일어 보겠는가.”라고 하였다. 즉 通報와 주로 군사소식을 담은 塘報가 공식적으로 조선에게 금지된 것인데 경우에 따라 명조 장수는 비록 조선이 명조 通報를 입수했음을 알면서도 違例 행위로 여겨 문제삼지 않았다(『선조실록』 권109, 선조 32년 2월 23일 1번째 기사).

53) 『광해군일기』(중초본) 권50, 광해 11년 8월 23일 3번째 기사 “備邊司啓曰，臣等伏見下備

안이 있었을 경우, 국왕은 특별히 입수한 通報를 대신들에게 읽게 하였다.⁵⁴⁾ 조선은 비록 중국에게 보낸 공식 문서에서는 通報를 증거로 삼지 못했으나 通報의 내용에 따라 중국의 공식 문서가 도착하기 전에 미리 대외교섭 혹은 사절단 파견에 대한 준비활동에 착수할 수 있었다.⁵⁵⁾ 이들 경우를 감안해보면 중국의 通報는 조선연행사에 의해 신속히 국왕에게 전달되었던 긴급문서로, 국왕과 비변사 대신들 사이의 정책결정에 있어 중요한 참고자료로서 기능했음을 알 수 있다.

요약하자면 조선 측은 중국 通報의 신빙성과 대외교섭 정책수립 상의 유용성을 잘 알고 있었다. 通報가 조선연행사의 對중국 정보 수집활동의 중요한 일환이 된 것은 바로 이러한 인식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4. 조선연행사의 通報 수집활동

1) 通報 수집 방식

명조정은 일찍이 국내의 동정을 외국에 유출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였고, 이 금령에 위반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규칙을 제정하였다. 1498년(弘治 9, 연산군 4) 北京과 지방에 있는 모든 군민 가운데 조공하러 온 외국인들과 사사로이 왕래하여 사정을 누설하는 자가 있으면 모두 변방의 衛所에 보내 充軍하는 법령을 세웠으며, 通事와 伴送人이 금령을 위반하는 경우 軍職에 있는 자라면 군법에 따

局中朝通報, 吏部尙書趙煥等題奏” 또한 이에 대한 비슷한 기록은 李德馨의 문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李德馨, 『漢陰文稿』「請勿別遣陳奏使謝恩之行兼奏辨明箚」(1991 韓國文集叢刊 65, 民族文化推進會) 359면 “往者臣在備局會坐, 得見中朝通報部科題奏, 未悉本國事情, 措語亦過貶薄. 故因傳教之下, 請遣使奏辨矣.”

54) 『선조실록』 권87, 선조 30년 4월 13일 4번째 기사 “上因以告急使所啓中朝通報, 命內宦傳示諸宰臣.”

55) 『선조실록』 권198, 선조 39년 4월 20일 4번째 기사 “右議政沈喜壽以爲, 凡有天朝弔慶大事, 我國使臣赴京, 聞見而詳細狀啓, 則不待天朝之傳諭我國, 而先行慰賀之儀者, 前例甚多, 不獨趙挺一行爲然, 臣亦身親履之. 往在丁酉夏, 以陳奏使行到遼陽, 得見通報, 有曰四月十七日夜, 乾清、坤寧宮一時災, 省直各衙門及諸王府皆遣使進慰云. 臣據此具由狀啓, 併進所有通報, 則禮曹不待謄黃之來, 卽爲請遣陳慰使.”

라 처벌하고 文職에 속한 자가 뇌물을 받은 것이라면 파직하여 평민으로 돌아가게 하였다.⁵⁶⁾ 또한 1538년(嘉靖 17, 중종 33)에 특히 회동관의 通事와 序班에 대해서 엄격한 賞罰 규칙을 제정하였다. 이들 가운데 뇌물을 받아 폐단을 일으키는 자는 모두 禮部로 하여금 參究하도록 하였다.⁵⁷⁾

그러나 비록 엄격한 통제제도가 세워졌다 하더라도 通報가 회동관에서 일하는 중국인을 통해 조선연행사에게 유출되는 경우는 종종 발생하였다. 提督會同館主事는 조선인이 通報를 구입했다는 이유로 館內의 하인들을 추문하기도 했으나⁵⁸⁾ 通報의 유출을 완전히 막지는 못하였다. 사실 조선연행사가 머물었던 숙소인 玉河館(즉 會同館의 南館)은 그들의 通報 수집활동의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조선연행사가 옥하관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 通報를 수집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조선연행사는 玉河館에서 일하는 중국인 小甲과 館夫를 통해서 通報를 입수하였다. 小甲은 원래 하급 무관에 해당하지만,⁵⁹⁾ 연행사는 이들을 玉河館에서 일하는 심부름꾼으로 여겼다.⁶⁰⁾ 館夫는 외국사신을 위하여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당시 玉河館에서 일하는 館夫의 수는 100명에 달하였다.⁶¹⁾ 1624년 10월 21일 洪翼漢은 小甲인 徐繼仁 등이 通報를 가지고 와서 보여주었다고 기록하

56) 張居正 等編, 『大明會典』 권108, 「朝貢通例」(明內府刻本, 하버드대학교 소장본) 29면 “又令在京在外軍民人等, 與朝貢夷人私通往來, 投托管顧, 摆置害人, 因而透漏事情者, 俱問發邊衛充軍, 軍職有犯, 調邊衛帶俸差操, 通事並件送人等, 系軍職者, 照軍職例, 系文職有贓者, 革職爲民.”

57) 위의 책, 卷109, 「賓客·會同館」 8면 “嘉靖十七年奏准, 在館通事序班, 辦歷勤謹, 夷語精熟者, 該寺具奏, 量加俸秩. 如有咨肆曠廢, 唆誘夷人爲非, 受賄作弊, 抗違該司提督官者, 俱聽禮部指名參究.”

58) 全湜, 『沙西集』「樣行錄」(1992 韓國文集叢刊 67, 民族文化推進會) 90면 “提督坐堂, 欲更呈出票單子, 已書正紙. 而東西館牌子, 皆不開門, 蓋恐更呈前單也. 提督前此推問人以買入通報之罪故耳.”

59) 王守仁, 『王文成公集』「兵符節制」(1962 『皇明經世文編 2』 권132, 中華書局) 1296면 “每二十五人編爲一伍, 伍有小甲. 五十人爲一隊, 隊有總甲.”

60) 金堉, 앞의 책, 164면 “小甲乃館中使喚之人.”

61) 張居正 等編, 앞의 책, 권145, 「驛傳一·會同館」 2면 “凡館夫, 額設四百名. 南館一百名, 北館三百名, 專造飯食, 以供使客.”

였다.⁶²⁾ 또한 1628년 12월 7일자 申悅道의 일기에 의하면 어느 小甲이 通報를 가져와 보여주었음이 확인된다.⁶³⁾ 館夫를 통해서 通報를 얻게 된 사례는 1637년 4월 15일 金堉과 李晚榮이 남긴 기록에서 찾을 수 있다. 그들은 館夫가 보여준 通報를 통하여 清이 조선에 쳐들어왔다는 소문을 확인하였다.⁶⁴⁾ 조선연행사들은 주로 재물을 代價로 小甲과 館夫에게서 通報를 얻었는데,⁶⁵⁾ 연행사 및 그들의 수행원이 小甲, 館夫들과 옥하관에서 맺은 교분이 그들의 정보 수집활동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⁶⁶⁾

둘째, 상황에 따라 提督會同館主事와 副使가 조선연행사에게 通報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1408년(永樂 6, 태종 8) 北京에서 會同館이 설치되었으며 主事와 副使 각각 한 명씩을 두었다. 提督會同館主事는 禮部 主客清吏司에 속한 정6품의 관원으로 會同館의 관리 책임자였다. 副使는 兵部에 속한 종9품의 관원으로 1441년(正統 6, 세종 23) 이후 조선연행사가 머물었던 옥하관에는 별개로 副使 한 명이 추가로 배치되었다.⁶⁷⁾ 請兵陳奏使 鄭岷壽가 1592년 10월에 남긴 일기에 따르면 옥하관 부사인 施允濟가 通報를 보내 보여주기도 하였다.⁶⁸⁾ 施允濟는 兵

62) 洪翼漢, 『花浦先生朝天航海錄』(2001 燕行錄全集 17, 東國大學校出版部) 197면 “小甲徐繼仁等持通報來示.”

63) 申悅道, 『懶齋集』「朝天時聞見事件啓」(2006 韓國文集叢刊續 24, 民族文化推進會) 54면 “在館, 提督下館, 小甲持示通報.”

64) 金堉, 앞의 책, 172-173면 “館夫以一張通報來示, 而字頑紙破, 不可解見, 細考文字乃高太監據走回遼陽人李國詳言, 馳報邊情事也. 有云馬兵獐子馱高麗物件到瀋陽, 而獐子言高麗城池已得了, 來調木工, 往高麗造船云. 無日月可考. 臣等乃此知我國被兵而邊情泄漏之罪極重, 故小甲等不得傳布, 尤極鬱悶”; 李晚榮, 앞의 책, 89-90면 “自上年十二月, 始聞我國被兵之奇, 雖有傳說之言, 久在疑中, 及聞此言, 驚惶曷極. 館夫一人以印本通報一丈來示, 乃關外大監高起潛據走回遼人李國祥言, 馳奏邊情事也. 有云馬兵獐子二百餘名, 馴載高麗貨物, 還到瀋陽, 言高麗城池已盡得了, 來調木匠, 往高麗造船云云. 日月磨破, 不可考也.”

65) 『중종실록』 권97, 중종 36년 12월 28일 1번째 기사 “前者通報, 例於玉河館門爲之, 故給人情則易得聞之矣.”

66) 옥하관의 小甲과 館夫 등이 조선연행사에게 通報를 비롯한 정보를 제공한 것에 대해서는 陳彝秋, 앞의 논문, 295-297면 참고.

67) 王建峰, 2005 「明代會同館管理人員及其職掌考述」 『煙臺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 218-219면.

68) 鄭岷壽, 『栢谷集』「赴京日錄」(1989 韓國文集叢刊 48, 民族文化推進會) 449면 “副使送示

部尙書 石星과 마찬가지로 山東省 출신의 인물로, 石星과는 깊은 교분을 맺은 사이였다. 施允濟는 항상 石星에게서 조선이 큰 兵禍를 입었으며 그 상황이 매우 비참하다고 들었기에, 조선에 대해서 동정의 마음을 지니고 있었다.⁶⁹⁾ 따라서 조선연행사에게 通報를 보여주었던 것은 그가 지난 동정심의 발로로 생각된다. 정유재란 시기 명조의 군사 지원을 요청하기 위하여 1596년 말에 北京에 다녀온 鄭期遠과 柳思瑗은 提督會同館主事 李杜에게서 朝報, 곧 通報를 받았다.⁷⁰⁾ 李杜는 화의에 적극 반대하는 입장에서 조선 사신들을 돋고자 했던 것이다.⁷¹⁾ 柳思瑗은 당시 사행활동에서 수집한 通報를 근거로 하여 그것에 기록된 내용을 다시 謄寫하여 聞見事件으로 제출하였다.⁷²⁾

셋째, 연행사절단에 소속된 역관을 통해서 通報를 얻는 경우도 있었다. 정사, 부사, 서장관, 이른바 三使臣과 달리 역관들은 중국어에 능통했고, 여러 차례의 사행을 통해서 北京에서 일정한 인맥을 구축할 수 있었다. 따라서 역관들은 비교적 쉽사리 通報에 접근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서 1592년 10월 10일 鄭岷壽는譯官 李海龍을 禮部로 보냈다. 李海龍은 9월의 通報를 가져왔는데 그 通報에는閣老 趙志皋와 尚書 石星이 올린 題本이 실려 있었다.⁷³⁾ 1630년 3월 5일 李恆이 남긴 연행록에 따르면 山海關에 체류했을 때 역관 黃國卿이 正月의 通報와 皇太子를 책봉하는 恩詔 및 敕文를 입수하였는데, 李恆은 즉각 이를 공문서를 謄書하여 장계를 갖춰 조선으로 보냈다.⁷⁴⁾ 清初에 들어서도 역관을 통해 通報를 수

通報中, 有行人薛藩題本, 宣諭朝鮮, 痘未急還, 請速發兵, 勸擊倭賊”: “副使示通報, 其中有楊摠兵揭報, 倭奴通書于安定大將前, 約與天朝將官五十日不要相殺云。”

69) 위의 책, 「在北京狀態」 428면 “本館副使施允濟見臣等曰, 兵部石尙書以鄉里之故, 待我親厚, 每爲我言貴國被賊之慘, 常切痛惋云云。”

70) 柳思瑗, 『文興君控于錄』(2008 燕行錄續集 102, 尚書院) 165면 “三十日辛酉, 留玉河館, 是日欽賜別下程, 提督裴送石尙書覆本及吏兵兩科參論朝報同封送于臣等。”

71) 차惠媛, 2010 「정유재란기明朝의 派兵 決定과 “公議”: 『文興君控於錄』을 中心으로」『중국사연구』 69, 251면.

72) 柳思瑗, 앞의 책, 391면 “中朝九卿科道等官, 上本中事涉於發兵征倭者, 日下書錄爲白乎矣, 皆因通報傳謄, 其有闕誤處, 不敢改正爲白遣。”

73) 鄭岷壽, 앞의 책, 448-449면 “送李海龍于禮部, 請送先來, 許之. 議書狀啓, 海龍持九月通報以示之. 閣老趙志皋憤禮部主事樂無聲之攻彈, 再上題本, 辭語慷慨, 讀未了, 令人起敬. 石尙書題本, 請身自東征, 雖不准許, 辭直義壯, 可以想見其人。”

집하는 활동은 지속되었다. 1677년 동지사절단이 남긴 기록에 따르면 역관 卞爾輔와 李芬을 통해서 通報 17건을 입수하였음이 확인된다. 이들이 입수한 通報에는 三藩의 亂에 관한 기사가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⁷⁵⁾

또한 조선연행사들은 北京에 이르는 연행길 도중에서도 조선인 역관, 현지 중국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通報의 내용을 접하거나 通報를 수집하였다. 通報의 주된 수집지점으로는 遼陽, 山海關, 通州, 豐潤縣 등이 있었다. 1597년 여름 陳奏使로 중국에 다녀온 沈喜壽는 遼陽에 도착하여 通報를 구해 읽었다. 그가 접한 通報에 따르면, 4월 17일 밤 乾清宮과 坤寧宮에서 일시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각 省과 直隸의 아문과 여러 王府에서 모두 사신을 보내 進慰하였다고 하였다. 沈喜壽는 이에 근거해 사유를 갖추어 장계를 올리면서 通報도 첨부하여 보냈다.⁷⁶⁾ 1618년 7월 23일 조선에 도착한 陳奏使 朴鼎吉이 보낸 장계에 따르면, 그들 일행은 7월 10일 遼陽에 주재하는 經略 楊鎬를 만났는데, 楊鎬는 명 장수 劉綱이 올린 상주문을 포함한 通報 한 책을 보여주었다. 조선연행사들은 謄書하기를 청했으나 그 후 楊鎬가 비밀로 하고 내놓지를 않았다.⁷⁷⁾ 한편 1630년 3월 5일 李恆 일행이 역관 黃國卿을 시켜 그 해 正月의 通報를 얻은 지점은 山海關이었다.⁷⁸⁾

조선연행사들은 北京 주변 지역인 通州와 豐潤縣에서 通報를 수집하였다. 1574년 8월 6일에 許筠이 남긴 일기에 따르면 사절단 일행이 通州에 도착했을 때 역관 白元凱가 全章 通報 2권을 가지고 와서 보였다. 입수한 通報는 6월 6일부터 8월 4일까지의 것이었는데, 매일 탄핵 논박, 인물의 錄注, 解職, 謂恩 및 奏請 등의 각項 題本이 실려 있었다. 다만 책 가운데에는 단지 題本의 머리말과

74) 李恆, 『雪汀先生朝天日記』(2001 燕行錄全集 13, 東國大學校出版部) 155면 “黃國卿得正月 通報及立皇太子恩詔赦文, 謄書以爲馳啓之計.”

75) 이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후술.

76) 『선조실록』 권198, 선조 39년 4월 20일 “往在丁酉夏, 以陳奏使行到遼陽, 得見通報. 有曰, 四月十七夜, 乾清坤寧宮一時災, 省直各衙門及諸王府皆遣使進慰云. 臣據此具由狀啓, 併進所有通報.” 이와 같은 내용은 또한 沈喜壽의 문집인 『一松集』에 실려 있다. 沈喜壽, 『一松集』(1990 韓國文集叢刊 57, 民族文化推進會) 298면 참조.

77) 『광해군일기』(중초본) 권46, 광해 10년 7월 23일.

78) 李恆, 앞의 책, 155면.

聖旨가 수록되었을 뿐이며, 그 일의 始末은 상세히 알 수가 없었다. 까닭에 許筠은 그 내용에서 18本을 필사하여 白元凱에게 書手를 시켜서 상세하게 기록하여 오도록 하였다.⁷⁹⁾ 8월 6일에 이미 8월 4일의 通報를 입수하였다는 것은 당시 조선연행사절단의 通報 수집 속도가 매우 신속했음을 잘 보여준다.

또한 1636년 10월 26일에 金堉의 기록에 의하면 그들 일행이 豐潤縣에 도착했을 때 어떤 중국인 선비가 역관들을 보고 이르기를, 자신이 北京으로부터 오다가 九月의 通報에 실린 都督 沈世奎가 올린 題本을 읽었는데, 거기에는 清이 조선을 협박하여 貢物을 들이라고 하였으나 조선에서 대답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있다고 하였다.⁸⁰⁾ 이를 통해 通報가 명조의 일반 선비들도 접근할 수 있는 정치 참고자료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역시 역관들이 현지인 선비와 조선사절단의 사이에 교량 역할을 수행하였다.

간략히 말하자면 16·17세기 조선연행사들은 주로 북경에 있는 옥하관에서 중국인 小甲과 館夫, 提督會同館主事와 副使, 역관을 비롯한 다양한 人員을 통해서 通報를 수집하였다. 또한 연행 도중에 遼陽, 山海關, 通州, 豐潤縣 등을 경유할 때 조선인 역관, 현지 중국 관원 및 중국인 등의 다양한 경로로 通報를 접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1574년 趙憲이 수집한 명조 通報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許筠을 비롯한 연행사절단은 역관 白元凱를 통해서 1574년 6월 6일부터 8월 4일까지의 通報를 입수한 바 있다. 그러나 許筠은 이들 通報의 내용을 자신의 문집에싣지는 않았다. 다행히 許筠과 함께 質正官 신분으로 北京에 다녀온 趙憲(1544~1592)은 사행의 노정과 경험, 특히 연행 중에서

79) 許筠, 『荷谷集』「荷谷先生朝天記」(1990 韓國文集叢刊 58, 民族文化推進會) 449면 “至自 通州, 白元凱得全章通報二卷來示。起六月初一日, 止今月初四日, 且載逐日彈駁銓注辭謝奏請等各項題本。但卷中只錄題本首詞及聖旨而已, 其事之始末則不得詳知。故余就其內抄出十八本, 令元凱借書手詳錄以來。”

80) 金堉, 『潛谷遺稿』「朝京日錄」(1992 韓國文集叢刊 86, 民族文化推進會) 272면 “晴, 點心于 板橋店, 早到豐潤縣, 凡行四十里。有士人見譯官等謂曰, 我自北京來, 見九月通報沈都督題本, 奴賊劫朝鮮使入貢, 朝鮮不答云。”

읽었던 6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의 通報 내용을 사행기록인 『朝天日記』에 자세히 기록하였다.⁸¹⁾ 비록 趙憲이 읽었던 通報가 바로 白元凱이 수집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나 通報의 내용을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름의 가치가 있다 할 수 있다.⁸²⁾

『朝天日記』에 실린 「中朝通報」는 지금까지 주목을 받지 못하며 활용되지 못한 사료이다.⁸³⁾ 그러나 「中朝通報」의 가치는 결코 간과할 수 없다. 1574년 6월부터 8월까지의 通報는 현재 중국에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⁸⁴⁾ 趙憲이 필사한 「中朝

81) 6월 3일, 6월 14일, 7월 2일, 7월 11일, 7월 20일, 8월 1일, 8월 2일, 8월 3일, 8월 4일, 8월 6일, 8월 7일, 8월 8일, 8월 9일, 8월 10일을 비롯한 14일 동안의 通報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음.

82) 필자가 지금 파악한 『조천일기』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1930년 朝鮮史編修會에 의해 헌수한 2책으로 구성된 판본으로 현재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소장되어 있다. 이 판본을 필사했을 때 이용한 底本은 全羅北道에서 살았던 趙憲의 후손인 趙炳淳이 소장한 판본이었다. 배낀 사람이 겸정색 붓으로 저본을 배낀 뒤에 校正한 사람은 붉은색 붓으로 필사본에 일부 오자를 수정하여 句讀도 표기하였다. 이 판본은 趙憲이 남긴 일기 내용과 명조 通報 내용을 나누지 않아 通報를 해당일의 일기의 앞부분에 배치하고 있다. 8월 3일, 6일, 25일의 通報 내용은 일기의 맨 앞부분에 별개로 두고 있었다. 국사편찬위원회의 사이트에는 이 필사본 『조천일기』의 저자가 미상이라고 적혀 있다. 하지만 이 책을 조현의 『重峰集』과 비교해보면 이것이 바로 조현의 『조천일기』임을 단정할 수 있다. 趙憲, 『조천일기』,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필사본, 등록번호 KO0013404. 다른 하나는 1748년(乾隆 12, 英祖 24)에 간행된 중간본 『重峰集』 권12에 실려 있는 활자로 인쇄된 판본이다. 현재 이 중간본이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으며, 한국고전번역원은 이 중간본을 저본으로 標點을 붙여 한국문집총간 제54권에 두었다. 이 『조천일기』의 저본을 보면, 원래 일기와 通報의 내용이 함께 기록되어 있었는데 중간본을 간행하면서 편집자가 「中朝通報」를 별개로 나누어 권12에 독립시켜 『조천일기』의 下卷에 해당하는 別編으로 편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수록된 8월 30일의 通報 내용 뒤에 8월 3일, 6일, 25일의 빠진 일기와 通報를 附記로 붙여 놓았다. 물론 두 판본은 내용 배치와 글자 표시 등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하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거의 일치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중간본 『重峰集』을 주요 사료로 이용하며 필요에 따라 필사본의 내용을 참고하고자 한다. 趙憲, 『重峰集』(1990 韓國文集叢刊 54, 民族文化推進會, 126 · 393면) 참조.

83) 그 동안 趙憲의 사행경험 및 『朝天日記』에 대한 연구는 다수 존재했으나 「中朝通報」를 다룬 본격적인 연구가 거의 없다. 夫馬進, 2015 「1574年朝鮮燕行使の「中華」國批判」「改革方案『東還封事』に見える趙憲の中國報告」 앞의 책, 144-186면; 김지현, 2014 「趙憲의 『朝天日記』에 대한 소고」 『온지논총』 40, 71-96면; 王鑫磊, 2015 「儒學交涉: 16世紀中後期朝鮮人眼中的中國學術」 『同文書史: 從韓國漢文文獻看近世中國』, 復旦大學出版社, 96-100면.

『通報』는 『明實錄』을 비롯한 중국 측 사료에서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을 다수 담고 있다. 까닭에 『中朝通報』는 萬曆 초기 정치사를 연구하는 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선연행사의 對중국 정보수집 활동에서 通報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보여줄 수 있는 가치 있는 사료라 할 수 있다.

『中朝通報』에는 附記를 포함하여 총 192개의 기사가 수록되어 있다. 내용을 보면 주로 관료사회의 人事考課 및 이동, 군사동정, 자연재해의 구제 등이 확인된다. 그 가운데 『明實錄』과 『萬曆起居注』에 기록된 내용과 거의 일치하는 기사는 50개 존재한다. 이하에서는 중국 측 사료를 대조하여 『中朝通報』의 신뢰도와 중국 사료를 보완하는 데 있어서의 유용성을 살펴보자 한다.

- Ⓐ 초8일 신해. 巡按 張憲翔은 蘇州通判 張鳴鳳이 일부러 명백한例를 위반하며 세력을 끼고서 갑문을 열어 放縱했다 하여 탄핵하였다. 直隸巡按 陳文燧는 전 임 摠兵 胡鎮이 貪暴하고 [缺落] 지은 죄가 심각하다 하여 탄핵하였다. 詔하기를 法司에게 提問하도록 하였다. 張鳴鳳에게 賦銀을 바치고 복직하도록 하며, 胡鎮은 혁직하고 巡按에게 提問하도록 명하였다.⁸⁵⁾
- Ⓑ 副總兵으로 宣大軍門 中軍의 일을 관리하는 胡鎮을 혁직시키고 巡按御史에게 보내 조사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巡按御史의 상주문에 따른 것이었다.⁸⁶⁾

Ⓐ는 『中朝通報』의 6월 8일의 기사이며 Ⓡ는 『明實錄』의 6월 7일의 기사였다. Ⓡ에서 胡鎮의 과면은 巡按御史의 상주문에 따른 것이라고 간략히 언급했을 뿐 상주문을 올린 巡按御史가 누구인지를 설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를 참조하면 胡鎮을 탄핵한 巡按御史가 바로 直隸巡按 陳文燧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에 따르면 그날 황제는 이 안건을 제외하고도 張憲翔이 張鳴鳳을 탄핵한 사안 역시

84) 1574년 6월부터 8월까지에 해당하는 『萬曆邸鈔』에는 “八月淮徐海嘯河溢”이라는 기사 하나만 수록되었다. 『萬曆邸鈔』 1991 江蘇廣陵古籍刻印社, 10면.

85) 趙憲, 앞의 책, 393면 “初八日辛亥, 巡按張憲翔劾蘇州通判張鳴鳳故違明例, 挾勢開閘放縱, 直隸巡按陳文燧劾原任摠兵胡鎮貪暴[缺]負罪深重之狀, 詔法司提問. 鳴鳳納贖還職, 草鎮任, 亦令巡按提問.”

86) 『明神宗實錄』 권26, 萬曆 2年 6月 7일 “革副總兵管宣大軍門中軍事胡鎮任, 下巡按御史問, 從巡按御史奏也.”

처리하였음이 확인된다. 즉 胡鎮 과면에 관한 「中朝通報」의 기록이 『明實錄』의 기록에 부합함은 물론 실록에서 생략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음이 확인된다.

다른 사례로 8월 22일의 『明實錄』에 실린 짧은 기사에 의하면 巡撫寧夏右僉都御史 羅鳳翔은 戶科給事中 張孫繩의 탄핵을 받아 휴직을 청했는데, 황제가 허락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⁸⁷⁾ 그러나 8월 28일의 「中朝通報」에는 寧夏巡撫 羅鳳祥이 올린 치사를 청하는 상주문 全文이 실려 있었다. 羅鳳祥은 7월에 6월 5일의 邸報를 받아보고 張孫繩이 자신을 탄핵했는데 황제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그가 자신을 변명하고 致仕를 청하는 상주문을 올렸다.⁸⁸⁾ 張孫繩이 羅鳳翔을 탄핵한 기사는 『明實錄』에서 찾을 수 없으나 「中朝通報」에 실린 6월 5일의 기사에는, 戶科給事中 張孫繩이 상주문을 올려 寧夏巡撫 羅鳳祥이 함부로 방자하게 굴고 貪暴했다 하여 탄핵하였다는 내용이 있었다.⁸⁹⁾ 여기서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은 문서의 날짜이다. 『朝天日記』에는 표시된 날짜는 通報를 읽은 날짜인지 혹은 通報의 발행날짜인지 설명이 없었다. 趙憲 일행이 8월 4일에야 北京에 도착하였음을 감안하면, 이들이 아직 北京에 도착하지 못한 6~7월 날짜로 『朝天日記』에 기록된 通報 기사들은 해당 날짜에 발

87) 『明神宗實錄』 권28, 萬曆 2年 8月 22日 “癸亥, 巡撫寧夏右僉都御史羅鳳翔以戶科給事中張孫繩論劾, 乞休, 不允.”

88) 趙憲, 앞의 책, 411면 “寧夏巡撫羅鳳祥一本庸劣, 不堪重任, 懇乞聖明俯賜罷斥, 以謝人言事. 臣於本年七月接得邸報, 該戶科給事中張孫繩論臣不職, 亟宜罷斥. 旨下吏部, 隨該本部覆議, 奉聖旨云云. 在六月初五日, 欽此. 臣聞命自天, 感激流涕, 卽望闕陳案, 叩謝天恩, 詰. 臣思念寒陋孤末, 何誤蒙恩假若此. 臣雖至愚, 安敢自惜犬馬, 仰負洪慈. 但臣才品庸下, 忝竊踰涯, 謬任籌邊, 負乘切懼匪才, 非惟無補於疆場, 抑且妨于賢路. 卽今奉身而退, 猶以爲晚. 若復違命苟延, 將來不無悞事, 臣百死安贖, 爲罪益重大矣. 以此甘心溝壑, 懇乞於君父之前者也. 至於張孫繩論臣數言, 果於臣有干無干, 不待臣辨, 自有公論. 巡撫會推, 自有資敍. 寧夏將士, 離心與否, 自有青天在上可知. 其所謂受賄劉簿, 膝行哀求, 標下杖斃衆多, 閩鎮重足而立者, 臣不惟奉例不敢辨, 則亦不必辨也. 但臣自揣踰越, 義當求退, 以讓賢能. 又今年及至五旬, 尚無一丁以立門戶. 其言至此, 心神俱灰, 展布無能, 恐妨邊計. 伏乞皇上, 倏念重地, 憐察赤心, 早爲罷臣, 別選才望優隆足勝邊地者, 以充是任, 使臣潛身畎畝, 沐沾唐虞之化, 歌誦覆載之仁, 卽榮幸莫大焉, 臣不任懇切祝願之至. 着遵旨供職.”

89) 위의 책, 393면 “初五日戊申, 戶科給事中張孫繩劾奏寧夏巡撫羅鳳祥凌肆貪暴, 大理右寺丞謝廷傑貪私暴戾疏略懶媚之狀, 請罷. 下吏部. 吏部覆奏, 邊方巡撫, 非有大過, 不宜數易. 凤祥姑着策勵, 廷傑以原職降一級調外任. 上曰, 是.”

행되었다가 8월 이후에 趙憲 일행이 입수, 열람한 것이었다. 또한 같은 사건에 대한 기록에 있어서 「中朝通報」에 표시된 날짜는 대부분 『明實錄』과 『萬曆起居注』에 표시된 날짜와 하루 또는 며칠 동안의 간격이 존재하였다. 위의 사례를 미루어보면 「中朝通報」에 표시된 날짜는 通報의 발행날짜인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中朝通報」에 기재된 『萬曆邸鈔』와 『明實錄』을 보충할 만한 다른 내용도 다수 존재한다.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萬曆邸鈔』에서 1574년 여름에 발생한 자연재해에 대해 “8월 淮河와 徐州에서 홍수가 발생하여 강물이 넘쳤다”고 간략히 기록한 바가 있었다.⁹⁰⁾ 8월 1일 『明實錄』의 기사에 따르면 兩淮巡鹽御史 王琢玉이 題本을 올려 兩淮에서 홍수가 발생하여 구제를 청하였는데, 황제는 戶部의 의견대로 2만 냥을 지불하여 구제하겠다고 하였다.⁹¹⁾ 이 기사를 제외하고 1574년 8월 『明實錄』에는 홍수에 대한 기록은 별로 없었다. 그러나 「中朝通報」를 보면, 당시 전국 범위에서 범람한 홍수에 대한 기사가 여러 건 수록되어 있으며, 수록한 상주문 역시 대개 全文이었다. 「中朝通報」에 따르면 8월 14일江西巡按御史 凌雲翼은 南昌 일대에서 홍수가 발생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가 매우 크다는 상주문을 올렸다.⁹²⁾ 16일에 河道都御史 傅希摯는 黃河가 범람하여 茶城(오늘날의 徐州 근처)으로 흘러갔는데 수로가 침적된 진흙으로 막혔다고 상주하였다.⁹³⁾ 18일에 直隸巡按 王湘은 直隸 지방에서 큰 홍수가 발생하여 피해가 크다고 보고하면서 구제를 청하였다.⁹⁴⁾ 24일 潛運總督 王宗沐은 지속적인降水로 인하여 지방이 맞이한 피해가 큼을 보고하였다.⁹⁵⁾ 25일 戶科都給事中 賈三近은 王宗沐이 올린 상주문을 읽은 뒤에 홍수 피해에 관한 구제 방법을 제시하는 상주문을 올렸다.⁹⁶⁾ 이와 같이 「中朝通報」에 실린 연이은 홍수에 대한 기록은

90) 『萬曆邸鈔』 10면.

91) 『明神宗實錄』 권28, 萬曆 2年 8月 1日 “兩淮巡鹽御史王琢玉題稱, 兩淮運司所屬呂四等三十場大旱之後, 加以惡風暴雨, 江海驟漲, 人畜渰沒, 廩塩漂沒, 廬舍傾圯, 流離饑饉, 請乞賑恤。戶部覆議, 將運司餘剩塩銀并扣賑挑河銀內動支二萬兩賑恤。從之。”

92) 趙憲, 앞의 책, 401-402면.

93) 위의 책, 403면.

94) 위의 책, 404-405면.

95) 위의 책, 408면.

96) 위의 책, 409-410면.

1574년 여름의 홍수피해 및 구제 상황을 파악하는 데 좋은 단서를 제공한다.

『中朝通報』에 기재된 내용에는 『萬曆起居注』를 보완할 만한 부분도 있다. 1574년 당시 萬曆帝는 12세의 어린 나이였다. 국가 정사는 거의 首輔 張居正 등에 의해 결정되었고, 萬曆帝 본인은 주로 經筵 및 儀禮적인 행사 등에 참석했을 뿐이었다. 1574년 6월부터 8월까지의 『萬曆起居注』를 보면 萬曆帝는 아버지 穆宗 隆慶帝의 實錄의 편찬이 완료된 것에 대해 신하에게 하사를 내린 것과, 隆慶帝의 昭陵에서 발생한 건축물 붕괴사건에 대해 지시한 것 이외에, 직접 정사에 참여한 기록이 거의 없다. 이 3개월간의 『萬曆起居注』에 자주 등장 하는 대신은 역시 張居正이었다. 『萬曆起居注』에 실린 萬曆帝가 張居正에게 하사를 내렸다는 기사는 7월 14일, 7월 25일의 실록 완수에 대한 하사의 기사, 8월 12일 萬壽節에 관한 하사의 기사, 함께 3건이 있었다.⁹⁷⁾ 그러나 「中朝通報」를 참고해보면 萬曆帝가 張居正에게 더 많이 하사를 내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中朝通報」에는 7월 15일, 7월 26일, 8월 13일, 8월 14일, 8월 15일에 연이어 張居正에게 하사를 내렸다는 기사가 실려 있는데⁹⁸⁾ 이 중 8월 14일과 8월 15일의 기사는 『萬曆起居注』에서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다. 또 「中朝通報」의 8월 26일 기사에는 張居正이 詔勅房의 인원이 부족하여 沈懋孝와 高啓愚를 추천하였고 萬曆帝가 곧 허락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⁹⁹⁾ 이것도 『萬曆起居注』와 『明實錄』에서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다. 萬曆 초기 정치운영의 세부동향 및 張居正이 황제에게서 받은 후한 대접을 「中朝通報」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趙憲은 명조의 정치동향 및 행정운영을 참고로 하여 조선사회에 관한 개혁조치를 제기하면서 通報의 내용을 개혁주장의 근거로 삼았다. 그는 중국에 다녀온 뒤에 국왕에게 올린 개혁제안인 「擬上十六條疏」에서 通報의 내용을 인용하여 자

97) 南炳文·吳彥玲 輯校, 『輯校萬曆起居注』(2010 天津古籍出版社, 각각 59면, 62면, 64면).

98) 趙憲, 앞의 책, 각각 397면, 399면, 401면, 401면, 402면. 7월 26일의 기사의 경우, 중간본 『重峰集』에는 “以實錄之成, 欽賞英公張呂等每銀八十兩”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필사본에는 “以實錄之成, 欽賞英公張, 張呂等每銀八十兩”으로 기록되어 있다. 즉 중간본 『重峰集』에서 張居正을 기록하지 않는 것이었다. 여기에 말하는 “英公張, 張呂”는 바로 英國公 張溶, 大學士張居正, 呂調陽이었다.

99) 위의 책, 410면 “二十六日丁卯, 大學士張居正奏, 詔勅房缺官, 推修撰沈懋孝, 編修高啓愚管理. 上曰, 是.”

신의 주장의 당위성을 역설하였다.

첫 번째 상주문인 「格天之誠」에서 趙憲은, “먼저 수양하고 반성하시는 道를 다함으로써 하늘을 감동케 하고 사람을 감격케 하는 근본으로 삼아야 합니다”라고 전의하였다.¹⁰⁰⁾ 이에 대한 자신의 주장의 합리성 및 근거가 바로 명조의 通報에 있다고 언급하였다. 설득력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는 상주문의 첫머리에 자신이 읽은 通報의 내용을 두었다. 인용된 通報에 따르면 명의 萬曆帝가 畿內의 극심한 가뭄을 가엾게 여겨 궁중에 단을 쌓고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니, 모든 官司들도 반성하며 경계하여 내외의 인심이 感悅하지 않음이 없었다.¹⁰¹⁾ 「中朝通報」 8월 14일의 기사를 대조해보면 「格天之誠」에서 인용된 부분은 江西巡按御史 凌雲翼이 올린 홍수피해를 구제해달라는 상주문에 있었다. 凌雲翼은 홍수사태의 심각성과 구제의 급박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전 畿內에서 가뭄이 발생했을 때 궁중에 단을 쌓았다는 先例를 인용하였다.¹⁰²⁾ 두 자료의 글자를 비교해보면 趵憲이 凌雲翼의 말을 그대로 인용한 것을 알 수 있다.

「聽言之道」라는 조목에서 趶憲은 명의 萬曆帝가 간언을 받아들인 것을 자세히 듣지는 못했으나, 通報를 보니 이에 관한 내용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趶憲이 인용한 通報에 의하면 명조에서 六科의 紿事中 및 13道의 撫按御史가 奏疏를 하면 통상 該部에 전하여 자세하게 의논하게 하고, 該部에서 覆奏하면 閣老에 물어 시행하지 않는 것이 없었다. 이에 대해 그는 천하의 일을 하나같이 조정의 공론에 의뢰하고, 황제는 그 사이에 전혀 私意를 개재하지 못하며 또 측근의 말에遷惑되지 않았다고 높이 평가하였다.¹⁰³⁾ 물론 「中朝通報」에 기재된 紿事中과 御史들이 올린 상주문에서 모든 일을 조정의 공론에 의뢰하였다고 말하기는 어렵

100) 위의 책, 「擬上十六條疏」 202면 “臣伏願殿下先盡修省之道，以爲格天感人之本。”

101) 위의 책, 「擬上十六條疏」 201면 “皇上憫念畿內亢旱，築壇宮中，竭誠露禱，通行諸司，一體省戒。中外人心，無不感悅云。”

102) 위의 책, 402면 “頃者皇上俯念畿內亢旱，築壇宮中，竭誠露禱，通行諸司，一體省戒。中外人心，無不仰頌。猶願皇上雖處九重之遠，不忘四海之憂，務正學親賢臣，以憂念畿輔之心推之，以及天下，則災異可弭，和氣可回，太平可致矣。”

103) 위의 책, 「擬上十六條疏」 “臣於皇上納諫之事，雖未詳聞，而伏見通報，六科給事中及十三道撫按御史，日有奏疏，例下該部，使之詳議。該部覆奏，則詢于閣老，無不施行。是則天下之事，一付于朝廷之公論，而帝不敢以一毫私意容於其間，且不爲近習之言所遷惑也。”

다.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1574년은 張居正이 거대한 정치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시점이었기 때문이다. 어린 황제의 私意보다는 張居正의 뜻이 정치운영에 더 많이 반영되었던 것이다. 趙憲은 조선국왕으로 하여금 자신의 주장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通報에 실린 명조의 정치동향을 조선이 배울 만한 모범으로 삼았다. 그러나 그가 通報 내용을 해석한 자세는, 사실 그대로의 해석이라기보다는 자신이 동경하는 정치 운영 모습을 通報의 내용과 섞어서 논술한 협의를 부정하기 힘들다.

趙憲이 실제로 본 명조의 정치상황과 귀국 후 작성한 문장에 묘사한 상황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존재하였다.¹⁰⁴⁾ 그러나 국왕에게 건의를 제기했을 때 두 번이나 通報를 언급하여 자신의 주장의 신빙성과 합리성의 근거로 삼았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말하자면 通報는 신뢰도가 있는 명조 정치의 참고자료로서 당시 조선 정치계에서 이미 인정을 받고 있었던 셈이었다.

연행길에 오른 趙憲의 신분은 정보 보고를 임무로 하는 書狀官이 아닌, 글의 音韻이나 기타 제도 등에 관한 의문점을 명나라에 질문하여 알아오는 일을 담당하는 質正官이었다. 따라서 그는 공식적으로는 정보를 수집하여 보고해야 할 의무가 없었다. 그렇다면 趙憲은 어떤 경로로 이들 通報를 읽게 되었을까? 연행사절단에 속한 역관 白元凱와 같은 사람이나 서장관 許筠을 통해 通報를 접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곧 연행사절단에는 通報 수집에 주의를 기울인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趙憲을 비롯한 연행사절단 인원들이 通報를 수집한 것은 개인의 관심사에 따른 우연한 행위가 아니라 국가정치 운영 및 대외교섭을 위한 對중국 정보수집 활동의 중요한 일환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기록이 없기 때문에 許筠이 어떻게 이를 通報를 활용하여 본국에게 보고했는지 알 수 없으나, 「中朝通報」가 현재 중국에도 남아 있지 않는 희귀한 자료로서 그 나름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三藩의 亂 시기 청조 通報의 수집활동

17세기 후반에 들어서도 조선연행사들은 여전히 通報를 수집하는 데 힘을 기

104) 이에 대해서 夫馬進, 앞의 책, 144-186면 참조.

울였다. 청조가 1644년에 入關한 이후 北京에서 통치체제를 정비해 나갔지만, 지방에서 일어난 反清운동은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불안정한 정세는 1673년에 들어 8년간 지속된 三藩의 亂을 계기로 절정에 달하였다. 청에 인접한 조선에서는 전쟁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시시각각 변화하는 현실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었다. 당시 반란세력은 復明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었으므로, 華夷觀을 겸지하던 조선의 입장에서는 이 전쟁이 復明을 위한 절호의 기회로 인식되었다.¹⁰⁵⁾ 전쟁의 동향을 파악하고 對清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외교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조선에서는 정확한 양질의 중국 관련 정보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었다.¹⁰⁶⁾ 자연히 신뢰도 있다고 여긴 通報와 같은 청조의 공문서는 조선연행사의 관심을 끌었다.

三藩의 亂 시기(1673~1681) 조선에 유입된 청조 通報를 도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¹⁰⁷⁾

〈표 1〉 三藩의 亂 시기 조선에 유입된 청조 通報 상황

제목 또는 주요 내용	입수 및 보고 시기	해당 시기	경로	출처
① 通報冊	1677.03.18	기록 없음	正使 吳挺緯와 副使 金禹錫과 書狀官 楊夏謙	숙종3년 3월 18일 2번째 기사
② 明珠에 대한 소문	1678.01.02	1677.09.14 이후	譯官 卞爾輔	燕見196-197
	1678.01.08	기록 없음	기록 없음	燕錄411-412
	기록 없음	1677.09	譯官 卞爾輔	同文1585
③ 吳三桂가 國號를 周로 고쳐 重興이 라는 연호로 建元한 것 등	1678.01.04	1677.09	譯官 李芬	燕見197

105) 이재경, 2014 「三藩의 亂 전후(1674~1684) 조선의 정보수집과 정세인식」『韓國史論』 60, 188-189면.

106) 조선은 三藩의 亂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조선연행사절단 이외에 義州와 日本對馬藩 등 다양한 경로를 이용하였다. 王桂東·達力扎布, 2013 「清“三藩之亂”期間朝鮮對清朝情報的搜集」『北華大學學報(社會科學版)』 4, 60-62면.

107) 여기에 표시된 燕見은 『燕中聞見』(2001 「丁巳十一月謝恩兼冬至正使瀛昌君沈副使沈梓書狀孫萬雄」『燕中聞見』, 燕行錄全集 95, 東國大學校出版部); 燕錄은 『燕行日錄』(孫萬雄, 2007 『野村集』, 韓國文集叢刊續 46, 民族文化推進會); 同文은 『同文彙考』 2(1978 國史編纂委員會). 숫자는 해당 쪽수이다. 숙종은 『肅宗實錄』이다.

	1678.01.04	기록 없음	譯官 李芬	燕錄411
	기록 없음	1677.09	譯官 李芬	同文1585
④ 吳三桂가 생질 吳大와 吳三을 파견한 것 등	1678.01.05	1677.09.07	譯官 卞爾輔	燕見197-198
	1678.01.05	1677.09.07	기록 없음	燕錄411
	기록 없음	1677.09.07	譯官 卞爾輔	同文1585
⑤ 吳三桂가 장군 19명을 파견한 것 등	1678.01.05	1677.09.19	譯官 卞爾輔	燕見198
	1678.01.05	1677.09.19	譯官 卞爾輔	燕錄411
	기록 없음	1677.09.19	譯官 卞爾輔	同文1585
⑥ 湖廣督撫이 올린 造船에 관한 密疏	1678.01.07	1677.09.13	譯官 卞爾輔	燕見198
⑦ 戶部가 올린 捐納에 관한 奏議	1678.01.08	1677.09.10	譯官 卞爾輔	燕見199
⑧ (孔有德의 부하) 孫延齡을 招撫한 것	1678.01.09	1677.04.20	譯官 李芬	燕見199-200
	1678.01.11	1677.04.20	기록 없음	燕錄412
	기록 없음	1677.04.20	기록 없음	同文1585
⑨ 滿洲將軍 穆占이 奉旨하여 吳三桂 를 南征한 것	1678.01.11	1677.08.27	譯官 卞爾輔	燕見200
	1678.01.11	1677.08.27	기록 없음	燕錄412
	기록 없음	1677.08.27	기록 없음	同文1585-1586
圖海와 王輔信이 漢川에 들어가 吳 三桂를 토벌하였는데 실패하여 援 軍을 청한 것	1678.01.11	1677.08.23	기록 없음	燕錄412
⑪ 長白山 제사에 관한 것	1678.01.13	기록 없음	譯官 李芬	燕錄412
⑫ 福建 耿藩 반란에 관한 民謠	1678.01.18	기록 없음	기록 없음	燕錄414
⑬ 清兵이 岳州에서 吳三桂의 군대와 싸운 것	1678.01.19	1677.08.28	譯官 卞爾輔	燕見201
	기록 없음	1677.08.28	기록 없음	同文1586
⑭ 康親王이 올린 山賊 朱統鋗에 관한 題本	1678.01.21	기록 없음	기록 없음	燕錄414
	1678.01.20	1677.11.14	譯官 卞爾輔	燕見201-202
	기록 없음	1677.11.14	기록 없음	同文1586
⑮ 吳三桂가 苗彝와 結親하여 會合한 것	1678.01.21	기록 없음	기록 없음	燕錄414
⑯ 皇帝가 내린 發兵에 관한 훈유	1678.01.20	1677.09.19	譯官 卞爾輔	燕見202-203
⑰ 吳三桂가 군대를 이끌고 耿精忠과 尙可喜에게 문좌한 것	1678.01.24	1677.10.12	譯官 卞爾輔	燕見203
	기록 없음	1677.10.12	기록 없음	同文1586
⑱ 吳三桂가 副將 夏國柱를 福建 廈門 에 파견하여 海寇 鄭金舍와 협력을 청한 것	1678.01.26	1677.11.01	譯官 卞爾輔	燕見204
	기록 없음	1677.11.01	기록 없음	同文1586
⑲ 通報 7권	1678.08.20	기록 없음	正使 李夏鎮	숙종4년 8월 20일 2번째 기사

三藩의 亂 시기 조선연행사의 通報 수집은 청조 측의 엄격한 제한을 받고 있었다. 조선사신들은 옥하관에서 며무를 때 출입 제한을 받았으며, 귀국할 때는

엄격한 검문을 받아야 하였다. 1677년 동지사 吳挺緯 등은 귀국하여 숙종을 알현하는 자리에서, 이번 사절단이 돌아오면서 山海關을 지날 때에 검문을 매우 까다롭고 각박하게 하여, 구입한 通報冊을 불태워 버리기까지 하였다고 보고하였다.¹⁰⁸⁾ 이는 청조가 본국의 정국 정보가 외국에 유출될까 걱정해서 通報의 유출을 단속하였고, 조선연행사는 通報의 구입이 청조의 금령을 위반하는 것임을 주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청조의 엄격한 단속에 불구하고 조선연행사들은 여전히 적지 않은 通報를 입수하였다.

위의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총 19개 기사에 三藩의 亂과 직접 관련된 通報는 11개가 있었다. 그 이외에 “皇帝가 내린 發兵에 관한 훈유”, “湖廣督撫이 올린 造船에 관한 密疏” 등은 비록 三藩을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으나, 당시 빈번한 군사 이동을 미루어보면 發兵과 造船의 목적이란 바로 吳三桂 등 반란세력을 토벌하는 데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즉 三藩의 亂에 관한 정보가 조선연행사가 그 시기 입수한 通報의 주요 내용이었다.

한편 孫萬雄 일행이 通報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譯官 卞爾輔와 李芬은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였다. 실제 1668년에 들어서 조선조정은 對중국 정보 수집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해, 청조 공문서를 구해온 이를 嘉賞하는 제도를 만들었다.¹⁰⁹⁾ 그 결과 연행사절단의 수행원, 특히 역관들이 通報를 수집하는데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되었다. 심지어 賞金을 받기 위해서 일부 수행원이 청조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낡은 문서를 필사하는 경우 또한 존재하였다.¹¹⁰⁾

까닭에 이들 通報의 신빙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서장관 孫萬雄은 자신의 연행록과 귀국하여 제출한 聞見事件에서 吳三桂가 국호를 周로 고치고, 重興이라는 연호로 建元했다는 내용을 담은 通報를 언급하였다. 또한 그는 3월 6일에 숙종을 만난 자리에서 吴三桂가 국호를 고쳐 周라 부르고 그 해를 重興 4년이라고 일컬으며, 雲南 등 여러 지방에서는 모두 重興通寶를 사용한다고 재차 보고하였다.¹¹¹⁾ 孫萬雄이 이들 通報의 내용을 근거로 聞見事件을 작성하여 국왕

108) 『肅宗實錄』 권6, 숙종 3년 3월 18일.

109) 『顯宗實錄』 권15, 현종 9년 10월 26일.

110) 伍躍, 앞의 논문, 209면.

에게 직접 보고한 것은 그가 通報의 신뢰도를 인정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실제로 周三桂는 1673년 말에 반란을 일으키고 1674년을 周王元年으로 하였지만,¹¹²⁾ 반란을 일으킨 당시에는 연호를 세우지 않았다. 그가 공식적으로 국호를 周로, 연호를 昭武로 반포한 시점은 1678년 3월에 衡陽에서 稱帝하였던 때였다.¹¹³⁾ 즉 1678년 1월 4일 譯官 李芬을 통해서 얻은 이 1677년 9월의 通報에 실린 내용은 완전히 믿을 만한 것은 아니었다.

비록 기록에 있어 몇 가지 오류가 존재했으나 이들 通報는 三藩의 亂 시기의 정세변화에 관하여 참고할 만한 세부 내용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明皇室의 후손으로 자칭하며 반란을 일으킨 朱統錫 세력에 대한 通報의 내용 역시 『清實錄』의 기록을 보완할 만한 것으로 보인다. 『清實錄』에서는 福建按察使 吳興祚이 光澤(福建省 서북지역에 위치함)에서 朱統錫 등을 패배시키자 그 잔당이 朱統錫을 잡아 투항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황제의 처리명령은 언급하지 않았다.¹¹⁴⁾ 通報에 따르면 황제가 朱統錫 등을 모두 참수하고 山寨를 파괴시키라고 명하였음이 확인된다.¹¹⁵⁾ 이와 같은 황제가 내린 명령은 또한 『清實錄』에 없는 내용이었다. 당시 정치상황을 고려하면 明皇室의 후손으로 자칭하는 朱統錫과 그를 따르는 무리를 극형에 처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이상한 기사가 通報에 등장하므로 이들 通報의 성격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1678년 1월 20일 譯官 卞爾輔에 의해 입수된 1677년 9월 19일의 通報에 따르면, 황제는 병부 대신들이 거짓으로 軍情을

111) 『肅宗實錄』 권7, 숙종 4년 3월 6일.

112) 『清聖祖實錄』 卷44, 康熙 12年 12月 22日.

113) 劉健, 『庭聞錄』, 卷5(1989 『近代中國史料叢刊三編 26』, 文海出版社), 107-108면 “三月, 三桂僭號. (중략) 是日, 乘馬出僞宮, 冠翼善冠, 衣朱衣, 登壇行袞冕禮, 畢, 乘輦返, 僞國號周, 僞元昭武, 改衡州爲定天府.”

114) 『清聖祖實錄』 卷69, 康熙 16年 10月 4日.

115) 『燕中聞見』 「丁巳十一月謝恩兼冬至正使瀛昌君沈副使沈梓書狀孫萬雄」 201-202면 “二十一日留館, 因譯官卞爾輔得見通報. 丁巳十一月十四日, 康親王題本也. 山賊朱統錫率僞總兵鄧珩帶數遠將軍印一顆, 自稱故明後裔, 密陷閩中. 臣領兵撲勦生擒朱統錫及其子朱義致義遷等, 則賊兵三千餘人自來投誠, 而但渠輩自稱故明之後裔, 姑爲枷留, 奏旨正刑云. 皇帝旨回, 俱爲行刑, 斬葬破寨云.”

은근하고 누락하는 것에 震怒하여 심지어 병부상서 色塞黑을 발로 차기까지 하였다.¹¹⁶⁾ 여기에 色塞黑은 塞色黑의 誤記인 듯하다. 『清實錄』에 따르면 塞色黑이 병부상서의 자리에서 예부상서로 轉任된 것은 1677년 8월 27일의 일로,¹¹⁷⁾ 그 이유는 실록에서 언급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당시 정체된 전쟁의 형세를 고려하면 軍機를 지체하는 이유로 대신을 轉任시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8월 27일에 전임된 병부상서에 대한 기사가 9월 19일자 通報에 등장한다는 것은 인사이동의 공포를 주요 내용 중 하나로 삼는 通報의 특성을 감안할 때 매우 의심스럽다. 또한 청조의 공식문서인 通報에서 황제가 신하를 발로 차는 극단적인 내용을 기록했을지 의문스럽다.

그리고 1678년 윤3월에 陳慰兼進香 사절단 정사로 연행길에 오른 李夏鎮은 여름에 北京에 머물 당시 동남 지방, 특히 岳陽에 관한 군사소식을 접하였다.¹¹⁸⁾ 당시 吳三桂 세력은 湖南 일대에서 포위되어 있었고, 吳三桂의 생질인 吳應期가 岳陽을 사수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을 미루어보면 李夏鎮이 접하는 군사소식은 청군과 吳三桂 세력의 전쟁에 관한 것임에 틀림없다. 李夏鎮은 8월 20일에 숙종을 알현하는 자리에서 소매에서 通報 7권을 꺼내 바쳤다. 같은 날 『肅宗實錄』의 기사를 보면 書狀官 安如石이 聞見事件을 올리며 吴三桂가 稱帝하여 국호를 大周라 하고, 紹武라고 改元하였으며, 그 손자 吴世霖을 세워 皇太孫으로 삼았다는 등 三藩의 亂과 관련한 정보를 다수 보고하였다.¹¹⁹⁾ 이를 정보가 바로 조선연행사가 읽었던 通報에 실린 내용이었을 가능성은 대단히 크다. 즉, 이번 연행사절단이 입수한 通報를 통해 이전 孫萬雄 등이 吴三桂가 重興이라고 改元했다는 보

116) 『燕中聞見』 「丁巳十一月謝恩兼冬至正使瀛昌君沈副使沈梓書狀孫萬雄」 202-203면 “二十三日留館，因譯官卞爾輔得見通報。丁巳九月十九日，陝西湖廣江西各處，兵機甚緊急，以清字密奏。皇帝覽奏發怒，召兵部官責以爾部逐日發兵，逐年發兵，而未聞一城收復，不見一處回兵。多以虛報，少以實聞，其假冒之狀，朕早已知道。爾部與出征將軍都統內外作弊虛哄，朕實痛之。爾部卽行各省發兵多少及征戰勝敗兵馬存亡之數，立限三箇月，據實查奏。如復有通同虛誣隱漏軍機，爾部罪當全族。仍自起足踢兵部尙書色塞黑退出云。”

117) 『清聖祖實錄』 卷68, 康熙 16年 8月 27일.

118) 李夏鎮, 『六寓堂北征錄』 「燕京有懷」(2008 燕行錄續集 109, 尚書院) 221면 “稍聞兵氣東南黑，雷鼓嘈嘈撼岳陽。”

119) 『肅宗實錄』 권7, 숙종 4년 8월 20일.

고한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安如石이 보고한 내용에는 문제가 있었다. 吳世霖이 三藩의 亂이 발발할 당시 北京에 있다가 1675년(康熙 14, 숙종 1)에 청에 의해 처형된 이상¹²⁰⁾ 吳三桂는 1678년에 吳世霖을 皇太孫으로 세울 리가 만무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위와 같은 있을 수 없는 내용이 종종 조선연행사가 수집한 通報에 등장했을까? 이것은 청나라 초기와 중기, 특히 康熙 연간 提塘官과 報文을 인쇄하거나 필사하는 사람에 의해 발행된 소식지인 “小報(또는 小抄로 불림)”가 크게 발달하는 상황과¹²¹⁾ 관련되어 있다고 본다. 이들 小報에는 아직 공식으로 발표되지 않은 공문 및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섞여 있었으며 청의 정식 通報(邸報)의 발행 경로에 끼어서 배포되었기에 항상 通報(邸報)와 혼동을 일으켰다.¹²²⁾ 청의 관원들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구분하지 못할 만큼 공식 通報(邸報)과 小報의 구별이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므로, 조선연행사가 수집한 通報 일부는 小報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러나 당시 조선연행사는 小報를 포함한 청조 소식지를 모두 通報로 여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의 <표 1>에서 제시하듯이 조선연행사가 접한 三藩의 亂에 관한 정확한 청조의 通報는 대부분 몇 달 전에 발행된 것이었다. 이는 청조의 정보 통제 등 이유로 조선연행사가 실시간 발행된 通報를 수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까닭으로 보인다. 三藩의 亂에 관한 정보를 때맞춰 받지 못하며 小報를 포함한 청조 소식지를 모두 通報로 받은 조선조정은 通報를 근거로 청조 정세를 판단하는 것에 적지 않은 제약이 있었다.

요약하자면 三藩의 亂 시기 청조의 엄격한 단속에 불구하고 조선연행사들은 전란에 관한 通報를 지속적으로 수집해왔다. 通報를 수집하는 과정에서는 역관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그 시기에 조선연행사가 입수한 通報는 신빙성에 있어서는 의문이 남는다. 이는 17세기 후반 조선연행사의 정보수집환경

120) 『清聖祖實錄』卷47, 康熙 13年 4月 13日.

121) 蔣良騏, 『東華錄』卷22(1980 中華書局) 363면 “近聞各省提塘及刷寫報文者, 除科抄外, 將大小事件採聽寫錄, 名曰小報。任意捏造, 驚人耳目, 請嚴行禁止, 庶好事不端之人, 有所畏懼。”

122) 이와 관련하여 程麗紅·焦寶, 2013 「清代小報初探」『現代傳播(中國傳媒大學學報)』9, 37-41면 참조.

이 16세기 말의 환경과는 큰 차이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通報가 믿을 만한 중국 공문서라는 인식은 여전히 조선연행사의 머릿속에 남아 있었다. 조선연행사가 적극적으로 通報를 수집하여 심지어 小報까지 입수하였던 것은 통보의 신뢰도에 대한 인식 때문이었던 것이다.

5. 맷음말

實錄, 正史와 같은 기록은 해당 황제가 죽거나 한 나라가 망한 뒤에 편찬된 책이다. 이들 史書에서 기록된 사건은 후대 편찬자에 의해 의도적으로 요약 또는 수정되는 경우가 종종 존재한다. 그러나 16·17세기의 通報, 곧 朝報, 邸報는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선포된 오늘날의 신문과 유사한 공문서로, 당대 정치동향의 압력을 받지만 후대의 정치변화로부터는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보면 通報는 原始史料로서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

16·17세기에 들어서 인쇄, 활자 등의 기술 발전은 通報의 광범위한 유통에 물질적 인프라를 제공하였다. 또한 16·17세기라는 동아시아 정세의 변환기에 있어, 조선은 양질의 정확한 중국 관련 정보를 필요로 하였다. 이러한 흐름에서 중국의 通報는 특히 조선연행사의 관심을 끄는 것이었다. 조선이 명대부터 지녀 왔던 중국 通報에 대한 지대한 관심은 명청교체 이후에도 유지되었다. 조선이 崇明反清을 표방하고 清人과의 접촉을 피한다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청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특히 三藩의 亂과 같은 격변기에 있어 對중국 정보수집의 중요성은 매우 커으며, 그 이후에도 청에 대한 정보수집이 명대 당시와 비교해 중요도가 떨어지는 일은 없었다.

조선에서는 중국 通報의 신빙성과 대외교섭 정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의 유용성을 명대 당시부터 잘 인지하고 있었다. 연행사들은 중국의 정세를 확인하거나 국왕에게 장계 및 상주문을 올릴 때 通報를 참고자료로서 자주 활용하였다. 조선국왕이 중국의 通報를 愛讀한 것 또한 주의할 만한 사실이었다.

중국조정에서 通報 유출에 대한 금령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연행사들은 여러 경로를 통하여 通報를 입수하였다. 그들은 옥하관에서 중국인 小甲과 館夫, 提督會同館主事와 副使, 역관을 비롯한 다양한 人員을 통해서 通報를 수집하였음은 물론, 연행 도중에도 鞏陽, 山海關, 通州, 豐潤縣 등지를 경유할 때 조선인 역관, 현지 중국인 등으로부터 通報를 접하였다.

이와 같이 조선연행사에 의해서 조선에 유입된 중국 通報는 조선시대의 관찰사서, 연행록, 개인문집 등에 실리게 되었다. 그 가운데 일부 通報는 현재 중국에도 남아 있지 않는 희귀한 자료로서 가치가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574년 중국에 다녀온 趙憲이 필사한 「中朝通報」에 수록된 通報의 내용은 『明實錄』, 『萬曆起居注』, 『萬曆邸鈔』를 보완할 만한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萬曆 초기 정치운영의 세부동향에 관한 정보를 알려준다. 또한 조선연행사가 명대부터 가진 通報가 믿을 만한 중국 공문서라는 인식이 명청교체 이후에도 남아 있었다. 三藩의 亂 시기에 조선에 유입된 通報는 신빙성에 있어서 의문점이 많지만 그 시기의 정세변화에 관한 소문 유포 상황을 탐구하는 데 일정한 유용성을 지니고 있다.

이들 사례를 통해 생각해 본다면, 중국사 및 당대 한중관계사를 연구하는 데 있어 조선 측 자료에 실린 중국 通報의 가치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조선연행사가 수행한 중국 通報 수집활동은 위에 언급한 사례에 한정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왔다. 예를 들어 1562년, 1608년, 1620년 각기 北京에 다녀온 柳仲郢, 崔覘, 黃中允은 각자 남긴 연행록에 적지 않은 중국 通報를 기록하였다.¹²³⁾ 조선연행사들이 주의를 기울여 通報를 수집한 것은 개인의 관심사에 따른 우연한 행위가 아니었다. 이들의 통보 수집활동은 국가정치 운영 및 대외교섭을 위한 對중국 정보수집 활동의 일환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이들 通報는 조선연행사의 정보 수집활동을 밝혀내는 데 유용한 단서를 제공할 뿐 아니라 조·명/청 관계사와 정보유통사 연구에도 귀중한 자료라

123) 각각 柳仲郢, 2008 『燕京行錄』, 燕行錄續集 101, 尚書院; 崔覘, 2008 『訥齋朝天日錄』, 燕行錄續集 103, 尚書院; 黃中允, 2001 『西征日錄』, 燕行錄全集 16, 東國大學校出版부 참조.

할 수 있다. 필자는 趙憲이 남긴 「中朝通報」 등의 사례에 관한 분석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관련 주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를 진행해나가고자 한다.

주제어 : 연행록, 정보수집, 通報, 趙憲, 삼번의 난

투고일(2017. 6. 16), 심사시작일(2017. 7. 5), 심사완료일(2017. 7. 19)

〈Abstract〉

Joseon Emissaries' Intelligence-gathering Activities of Chinese Tong-Bao during the 16-17th Centuries

Ding Chen-Nan *

Printing technology made great progress in China during the 16-17th centuries. Tong-Bao (Chao-Bao, or Di-Bao) as internal political reference was widely spread. The 16-17th centuries is also a period of enormous political unrest in eastern Asia. Joseon, one of China's neighbors, was profoundly influenced by political unrest in China. In order to deal with diplomatic affairs with China and protect its own benefits, the Joseon government paid much attention to intelligence gathering in China. The Joseon government collected a large amount of Chinese Tong-Bao through emissaries to China. Some records about Chinese Tong-Bao in Joseon historical materials are not even recorded in Chinese documents and not preserved in China, which show Tong-Bao's unique value.

This article analyzes Joseon emissaries' intelligence gathering during the 16-17th centuries, and discusses methods of intelligence gathering through Chinese officers in Yuhe Embassy and local people on their way to Beijing. At the same time, those translators in Joseon emissaries' missions played a very important role in intelligence gathering. Jo Heon, an envoy went to China in 1574, recorded Tong-Bao from June to August daily in his Records of Trips to Beijing, most of which are not recorded by Chinese historical documents. There were also large quantities of Tong-Bao brought to Joseon by Joseon emissaries during the Revolt of the Three Feudatories (1673-1681).

Key Words : Records of Trips to Beijing, Intelligence-gathering, Tong-Bao, Jo Heon, Revolt of the Three Feudatories

* Ph.D Candidate of Department of History, Yonsei University.